

연구보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김남균·최서연·유혜진·조기홍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 월

연구진

연구기관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남균 (교수, 한서대학교)

연구원 : 최서연 (교수, 한서대학교)

연구원 : 조기홍 (실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연구원 : 유혜진 (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요약문

- 연구기간 2022년 04월 ~ 2022년 10월
- 핵심단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실태조사
- 연구과제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비정형화된 고용관계가 증가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산업재해 역시 증가추세에 있음.

정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고종사자 노무 제공 형태의 다양성, 쉬운 이직 등 직종 특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교육장소 미비, 전문강사의 부재, 교육생 부족 등의 이유로 인터넷원격교육을 통해 특고종사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 또한 동일 또는 유사 교육을 중복 수강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①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분석, ②규모 및 현황 분석, ③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법령 분석, ④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⑤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선 조사하고, 다음의 연구를 수행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산업특성이 상이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실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직종별 산업 현황, 사업구조 및 체계, 전속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음.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제시함.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법령 분석

국외 사례 분석을 위해 독일, 영국, 일본의 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각 국가별 안전보건교육의 운영방법을 조사 및 분석함.

또한, 국내 타 법령상의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사항은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강사 양성제도 운영 활성화와 안전보건교육 통합운영을 통한 중복교육 방지방안을 제시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 항목을 구성하고, 심층조사를 위한 간담회 기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음.

또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다수의 종사자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함. 더불어 현재 안전보건교육을 운영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법령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언

각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직종별 특성이 상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특성상 획일적인 안전보건교육제도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성이 유사한 직종을 그룹핑하여 공통 및 그룹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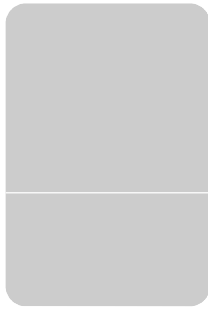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
- 관련 법령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서대학교 교수 김남균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차장 최윤석
 - ☎ 052) 703. 0825
 - E-mail mrhunk@kosha.or.kr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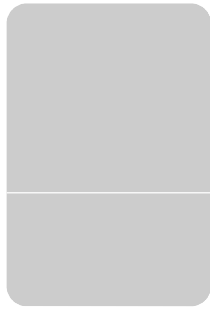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표	5
3. 연구의 방법	6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제도 현황	9
1. 특고종사자의 적용범위	11
2. 특고종사자에 대한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	17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분석	25
1. 직종별 특고종사자 현황	27
2. 특고종사자 규모	59



목 차

3. 소결	62
IV.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법령 분석	65
1. 특고종사자에 대한 국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조사	67
2. 타 법령에 의한 유사교육제도	86
3. 소결	93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95
1. 목적	97
2. 조사방법	97
3. 설문조사 결과	99
4. 간담회 기반 면담조사 결과	116

5. 조사결과 기반 5개 문항 비대면 설문조사	130
6.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교육 운영 실태	134
7. 소결	166
VI.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언	169
1.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제시	171
2.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175
VII. 결론	183
참고문헌	187



목 차

Abstract 193

부록 : 설문조사지 199

표 목차

〈표 Ⅱ-2〉 특고종사자의 직종별 적용범위	13
〈표 Ⅱ-3〉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시간	19
〈표 Ⅱ-4〉 특별교육 시 교육시간	22
〈표 Ⅲ-1〉 퀵서비스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27
〈표 Ⅲ-2〉 퀵서비스 기사 산재 현황	28
〈표 Ⅲ-3〉 택배업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31
〈표 Ⅲ-4〉 택배기사 산재 현황	32
〈표 Ⅲ-5〉 화물차주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34
〈표 Ⅲ-6〉 화물차주 산재 현황	35
〈표 Ⅲ-7〉 대리운전기사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38
〈표 Ⅲ-8〉 대리운전기사 산재 현황	39
〈표 Ⅲ-9〉 건설기계조종사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41
〈표 Ⅲ-10〉 건설기계조종사 산재 현황	42
〈표 Ⅲ-11〉 캐디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45
〈표 Ⅲ-12〉 골프장 캐디 산재 현황	46
〈표 Ⅲ-13〉 방문판매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49
〈표 Ⅲ-14〉 방문판매원 산재 현황	50
〈표 Ⅲ-15〉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53
〈표 Ⅲ-16〉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산재 현황	54
〈표 Ⅲ-17〉 가전제품설치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55

표 목차

〈표 Ⅲ-18〉 가전제품설치원 산재 현황	56
〈표 Ⅲ-19〉 특고종사자의 규모 추정 결과	60
〈표 Ⅲ-20〉 2022년 직종별 특고종사자 현황	62
〈표 Ⅳ-1〉 영국 안전보건교육 근거법령	79
〈표 Ⅳ-2〉 일본 안전보건교육 시간	84
〈표 Ⅳ-3〉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1항 관련)	86
〈표 Ⅳ-4〉 (타 법령에 의한 유사교육제도)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교육 이수 의무 있는 경우, 산안법 상 교육의무 제외를 위해 조사	87
〈표 Ⅳ-5〉 국외의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93
〈표 Ⅴ-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0
〈표 Ⅴ-2〉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101
〈표 Ⅴ-3〉 회사 소속 여부	102
〈표 Ⅴ-4〉 계약 체결 유형	102
〈표 Ⅴ-5〉 노무 제공형태	103
〈표 Ⅴ-6〉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현황	104
〈표 Ⅴ-7〉 업무 관련 사고나 건강상 위험 경험 여부 - 지난 3년 기준	104
〈표 Ⅴ-8〉 수행 업무의 사고나 건강상 위험 노출 여부	105
〈표 Ⅴ-9〉 위험 발생의 주요 원인(노출 인식 대상)	106
〈표 Ⅴ-10〉 타 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107

〈표 V-11〉 타 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이수자 대상)	107
〈표 V-12〉 타 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형태(이수자 대상)	108
〈표 V-13〉 안전보건공단 특고종사자 교육 인지 경로	109
〈표 V-14〉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인식	110
〈표 V-15〉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효과성 인식 ..	110
〈표 V-16〉 특고종사자 대상 가장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방법	111
〈표 V-17〉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요구 사항	111
〈표 V-18〉 현행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효과성 ..	112
〈표 V-19〉 특고종사자의 인터넷 원격교육 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12
〈표 V-20〉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비용의 부담 주체	113
〈표 V-21〉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시 집체교육 이수 의향	114
〈표 V-2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 여부	114
〈표 V-23〉 특고종사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도입 시 산재예방 효과 여부 ..	115
〈표 V-24〉 면담조사 결과_퀵서비스기사	116
〈표 V-25〉 면담조사 결과_택배기사	118
〈표 V-26〉 면담조사 결과_화물차주	119
〈표 V-27〉 면담조사 결과_대리운전기사	121
〈표 V-28〉 면담조사 결과_건설기계조종사	123
〈표 V-29〉 면담조사 결과_골프장 캐디	125
〈표 V-30〉 면담조사 결과_방문판매원	126
〈표 V-31〉 면담조사 결과_가전제품설치원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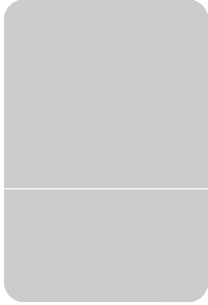
표 목차

〈표 V-32〉 면담조사 결과_대여제품방문점검원	129
〈표 V-33〉 참여대상자의 직종 특성	130
〈표 V-34〉 안전보건교육 참여 확대 방안	131
〈표 V-35〉 안전보건 교육 시 고민 사항	132
〈표 V-3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유사 제도의 필요	132
〈표 V-37〉 교육 비용의 주체	133
〈표 V-38〉 비용 지원 시 교육 참여 의향	133
〈표 V-39〉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퀵서비스기사	136
〈표 V-40〉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36
〈표 V-41〉 사단법인 퀵서비스협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퀵서비스기사	137
〈표 V-42〉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퀵서비스기사	138
〈표 V-4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택배업	139
〈표 V-44〉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39
〈표 V-45〉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택배업인원	140
〈표 V-46〉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141
〈표 V-47〉 화물자동차 운전자보수교육(집합)	142
〈표 V-48〉 법령위반자 교육	142
〈표 V-49〉 제주특별자치도	142
〈표 V-50〉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143
〈표 V-51〉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143
〈표 V-52〉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144

〈표 V-53〉 강화교육	144
〈표 V-54〉 전라남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145
〈표 V-55〉 법령위반자 교육	145
〈표 V-56〉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	146
〈표 V-57〉 온라인 교육 오전, 오후	146
〈표 V-58〉 현지교육	147
〈표 V-59〉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147
〈표 V-60〉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148
〈표 V-61〉 법령위반	148
〈표 V-62〉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집합)	149
〈표 V-63〉 인터넷 교육	149
〈표 V-64〉 법령 위반자 교육	150
〈표 V-65〉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150
〈표 V-66〉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151
〈표 V-67〉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152
〈표 V-68〉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153
〈표 V-69〉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화물차주	154
〈표 V-70〉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54
〈표 V-7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대리운전 기사	155
〈표 V-72〉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55
〈표 V-7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건설기계조종사	156

표 목차

〈표 V-74〉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57
〈표 V-75〉 일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58
〈표 V-76〉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58
〈표 V-77〉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	159
〈표 V-78〉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골프장 캐디	160
〈표 V-79〉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60
〈표 V-80〉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골프장 캐디	161
〈표 V-8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방문판매원	162
〈표 V-82〉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62
〈표 V-8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63
〈표 V-84〉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63
〈표 V-85〉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164
〈표 V-86〉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164
〈표 V-87〉 대한안전교육협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65
〈표 VII-1〉 안전보건교육 추가 내용 제안	177



그림목차

[그림 Ⅱ-1]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정의	18
[그림 Ⅱ-2] 교육시간의 면제 관련 법령	18
[그림 Ⅱ-3] 특고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내용	20
[그림 Ⅱ-4] 특고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	21
[그림 Ⅱ-5]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	22
[그림 Ⅲ-1] 퀵서비스 사업 기본유형	29
[그림 Ⅲ-2] 퀵서비스 업계 구조	30
[그림 Ⅲ-3]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간 계약 관계	33
[그림 Ⅲ-4] (2019.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체계	36
[그림 Ⅲ-5] (~2019.6.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체계	37
[그림 Ⅲ-6] 대리운전 시장 형태	40
[그림 Ⅲ-7] 건설기계대여업 구조	43
[그림 Ⅲ-8] 건설기계대여업 계약 구조	43
[그림 Ⅲ-9] 방문판매원 등 사업구조	51
[그림 Ⅲ-10] 가전회사별 사업구조	57

I. 서론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대사회의 산업구조는 점차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¹⁾ 서비스업이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고용주들이 보다 유연성이 강화된 고용 관계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정형화된 형태의 고용 관계가 아닌 비정형화된 고용 관계가 증가하게 되었다.²⁾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산재보험 및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한 특고종사자 규모 파악 결과, 2015년 말 약 41만 5천 명에서 2020년 말 64만 5천 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8월 기준 약 94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³⁾ 하지만 2011년 고용노동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특고종사자의 규모가 약 129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근로자 중 특고종사자

1) 박보현, 조연재, 오상호 (2019).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문제와 대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을 중심으로.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8(4), 208-220

2)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3) 한국일보(2023.01.10.), 특고종사자 점점 늘는데... 69%는 국민연금 수급기준 미충족

134만명과 1인 자영업자 중 특고종사자 96만 명을 합한 230만 명의 특고종사자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⁴⁾ 이렇듯 특고종사자에 대한 통계 조사는 그 규모를 과소 추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특고종사자의 중대재해는 2017년 5명에서 2021년에는 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63명으로 증가했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에서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중대재해의 증가 원인에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도 있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중대재해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산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고종사자 노무 제공형태의 다양성, 쉬운 이직 등 직종 특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교육장소 미비, 전문강사의 부재, 교육생 부족 등의 이유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해 특고종사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는 실정이며, 이 또한 동일 또는 유사 교육을 중복 수강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특고종사자에 관한 연구는 특고종사자들의 노동 취약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현황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4) 정흥준 (2019).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현황과 실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4-51

5) 메디컬투데이(2023.03.02.), 지난해 산재승인 사망자 874명으로 소폭 증가...특고종사자 증가폭↑

파악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고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 파악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특고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고 종류별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최대한 다양한 사업장과 지역을 고려하여 수행함으로써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한하고, 또한 특고종사자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고종사자의 산재 예방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파악
 - 직종별·노무제공형태별 규모 및 안전보건교육 대상 현황 조사
- 안전보건교육 실태 파악
 -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9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 특고종사자 교육운영 현황 조사
- 실태조사 진단·분석을 통한 현 제도의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
 - 특고종사자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포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안전보건교육 대상 재검토,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시 실효적 운영방안 제시

3.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선행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국내외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관계 법령 및 통계 자료 등을 통하여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한다.

2) 비대면 설문조사

특고종사자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9종,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의 종사자로, 해당 종사자들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의 특고종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특고종사자 중 300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 간담회 기반 면담조사

각 직종별 종사자, 관련 협회 및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 등 72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수행하여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확인 및 보다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고서에 반영한다.

4) 조사 결과 기반 5개 문항 비대면 설문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5개 문항을 도출하고, 이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을 이수한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5) 전문가 회의

총 2회에 걸쳐 특고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안전보건 전문가, 노사 및 시민 단체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수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검토 및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성을 검토한다.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제도 현황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현황

본 장에서는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 및 현행 교육제도의 내용을 파악한다.

1. 특고종사자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고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재보상보험법에서 특고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의 범위는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2020년 이후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고종사자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 표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제도시행일과 해당 직종을 나타낸다.

〈표 II-1〉. 특고종사자에 대한 제도 시행일과 해당 직종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
'08. 07.01.	-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건설기계 직접운전기사 (2019년 1월 1일) - 학습지 교사→방문강사 (2020년 1월 7일) - 골프장 캐디	'20. 01.16.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직접운전기사 - 학습지 교사 → 방문강사 (2021년 11월 19일)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12. 05.01.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16. 03.28.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20. 01.07.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또는 사료 (2022년 7월 1일))을 운송하는 사람)	'21. 11.19.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을 운송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기술자
'21. 01.12.	소프트웨어기술자		
'22. 07.01.	- 택배 지·간선기사 - 유통배송기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특고종사자의 각 직종별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II-2〉특고종사자의 직종별 적용범위

직종	적용 범위	산재보상	산업안전	안전교육
		보험법	보건법	대상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건설기계 운전자(『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캐리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쇠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횡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1호~25호 및 27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 27. 타워크레인 【26. 특수건설기계】 1. 도로보수트럭 2. 노면파쇄기 3. 노면측정장비 4.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5. 아스팔트크리트재생기 6. 수목이식기 7. 터널용고소작업차 8. 트럭지게차	○	○	○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	○
택배기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기사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	○
택배	택배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운수	○	-	-

직종	적용 범위	산재보상	산업안전	안전교육
		보험법	보건법	대상
지·간선 기사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기사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	○
대출 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	-
대리운전 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	○
방문 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	○
가전제품 설치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	○
화물차주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	△ (마, 바 목	△ (마, 바 목

직종	적용 범위	산재보상	산업안전	안전교육
		보험법	보건법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미적용)	미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	-
유통배송 기사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	-	-

직종	적용 범위	산재보상	산업안전	안전교육
		보험법	보건법	대상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2. 특고종사자에 대한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특고종사자 직종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종사자라 함은 <표 II-2>에서 명시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을 뜻한다.

- 특고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의 목적은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특고종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특별교육’으로 구분된다.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1)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단기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한다.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시간 정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2조제7항 및 제8항

7. "단시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그림 II-1]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정의

- 다만,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고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 시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한다.
-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면제한다.

교육시간의 면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그림 II-2] 교육시간의 면제 관련 법령

- 따라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II-3〉.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시간

구 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 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100	1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0/100	1시간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5/100	30분	
5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6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기간이 짧고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교육대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

(2)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교통안전 및 운전 안전, 사고 예방,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밑줄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합한 교육)

1.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그림 11-3] 특고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내용

- (교육방법) 집체교육(전용의 교육시설),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제95조제3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 제공 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중이며, 완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 이를 이수할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 (현장 주지 의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고종사자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그림 II-4] 특고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

2) 특별교육

(1) 교육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기 작업, 하역기계 5대이상 작업 등
- : 건설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①굴착기 작업(2m 이상 굴착작업, 2m 이상 콘크리트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②지게차 5대이상 작업, ③천공기 작업(자주식에 한함) 이 해당된다.

(2)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다만,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을 면제한다.
-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면제한다.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면제**

[그림 II-5]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

- 따라서 특별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II-4〉 특별교육 시 교육시간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16시간	채용 시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분할 실시 가능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8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1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5	도급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대형 토목공사현장, 대형 지하터파기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특별교육 시간이 1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대상 건설기계도 주로 굴착기, 자주식 천공기에 불과하며, 최대 16시간의 교육도 최초 작업투입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간 분할 실시가 가능하여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3)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공통사항 및 당해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 관리 사항으로 분류(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가능

: 인터넷 원격교육은 1/3까지만 인정되며, 2/3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2제2항제3호)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에서는 건설기계 2시간/1시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완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 이를 이수할 경우 특별교육 일부(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가능하다.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분석

.....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특고종사자의 적용 범위 및 각 직종별 현황을 파악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실제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통계 자료 외의 통계청 및 선행연구자료의 데이터를 조사·분석하였다.

1. 직종별 특고종사자 현황

1) 퀵서비스 기사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퀵서비스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다.⁶⁾

〈표 Ⅲ-1〉 퀵서비스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893	1,314	1,894	2,681	4,883
입직자 수	14,649	18,385	44,063	105,025	121,822

6) 근로복지공단, 2018,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이 외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른 종사자 수는 2021년 41,679명으로
입직자 수와 차이를 보인다.⁷⁾ 근로복지공단 및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 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퀵서비스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1명, 2021년 4명, 2022년 9명, 질병
사망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020년
970명, 2021년 1,642명, 2022년 2,647명, 사고사망 2020년 15명, 2021년
18명, 2022년 39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2〉 퀵서비스 기사 산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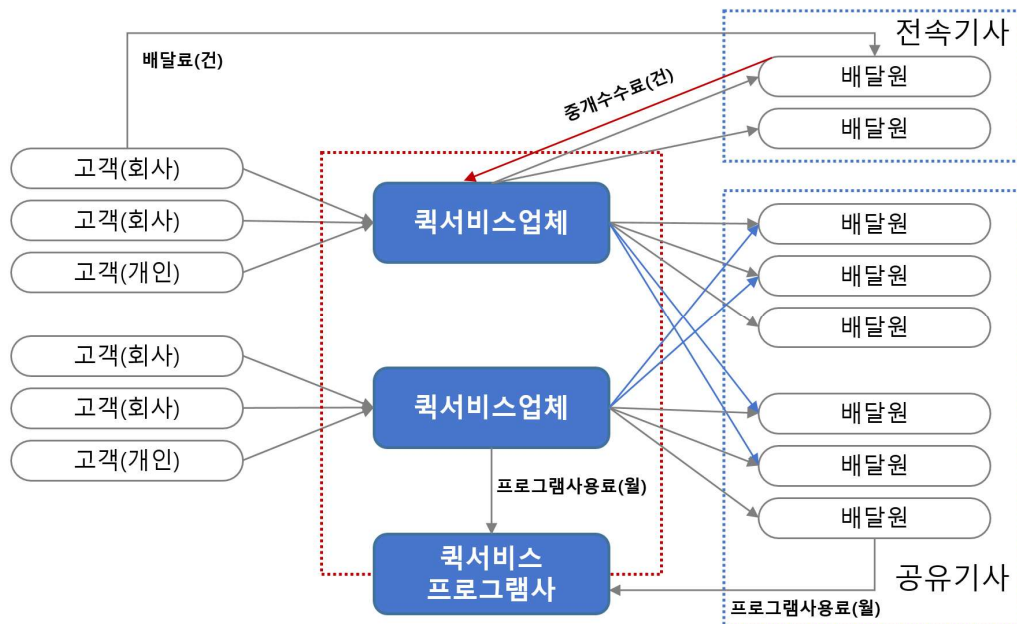
(단위 : 명, %, ‰, %)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1	4	9
질병 사망	0	1	2
사고부상(90일이상)	970	1,642	2,647
사고사망	15	18	39
사고사망만인율	3.980	1.714	3.202
재해자수	976	1,660	2,686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율	0.04	0.017	0.032
재해율	2.589	1.581	2.205

7)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2) 사업구조 및 체계

퀵서비스 사업 기본유형⁸⁾과 같이 퀵서비스는 고객(송화주)이 퀵서비스 업체에 배송을 의뢰하고, 퀵서비스 업체가 배송기사에게 다시 배송을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수하주)에게 배송을 완료하는 프로세스이다. 퀵서비스 업체는 전화, 온라인,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중개사업자(프로그램사)와 이륜차 배송기사 간 계약 또는 직접고용 관계 형성이다.⁹⁾



[그림 Ⅲ-1] 퀵서비스 사업 기본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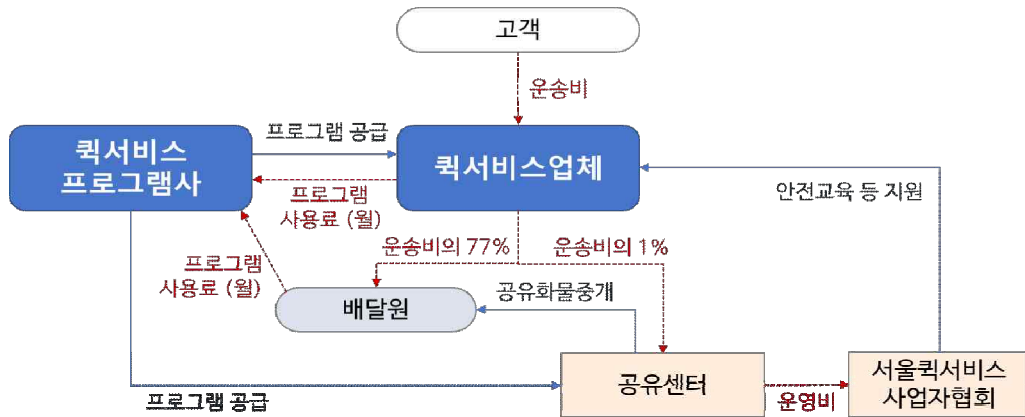
퀵서비스 업체 구조¹⁰⁾를 보면 업체는 업무처리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잉여주문의 상호 공유를 위해 운송비의 1%를 모아 공유센터를 운영 중이며,

8) 이근열(2020.6.19). 배달산업 및 노무제공 구조, 근로복지공단 활용하여 재작성

9) 조선비즈(2021.04.05). "생각대로"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선정... "전국 배송 네트워크로 이륜차 배송시장 선도"

10) 이지선,장소영. (2021.07.0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퀵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조정 등의 역할 담당을 위한 협회를 구성 협회는 공유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배송기사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2] 퀵서비스 업계 구조

(3) 전속성

종사자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볼 때, 소속 지사의 지점장으로부터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앱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고, 건별 계약으로 보수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쿨을 잡을 것인지의 여부, 노무의 제공시간·노무제공 일·이동 경로 등의 선택이 전적으로 종사자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업무수행방식이 자유로운 점, 업무에 필요한 도구 (오토바이) 또한 자가 또는 렌트/리스 등 종사자 본인의 결정 사항인 점 등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은 낮다고 판단된다.¹¹⁾

11) 전윤구.(21.1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 택배기사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택배업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¹²⁾ 이러한 택배업 종사자들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된 관광업, 여행업, 택시업 등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택배업으로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3〉 택배업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1,595	1,728	3,311	4,462	5,282
입직자 수	14,649	17,100	36,171	53,739	59,709

통계청 운수업 조사(2019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¹³⁾ 택배업 종사자 수는 45,306명으로 입직자 수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택배 서비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 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⁴⁾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택배기사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15명, 2021년 42명, 2022년 49명,

12) 근로복지공단, 2018,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13) 통계청. 운수업 조사 결과. 2020. 12. 8.

14) 배규식. (2020.07).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노동. 한국교통연구원

질병 사망 2020년 6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사고부상(90일이상) 2020년 44명, 2021년 171명, 2022년 188명, 사고사망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3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4〉 택배기사 산재 현황

(단위 :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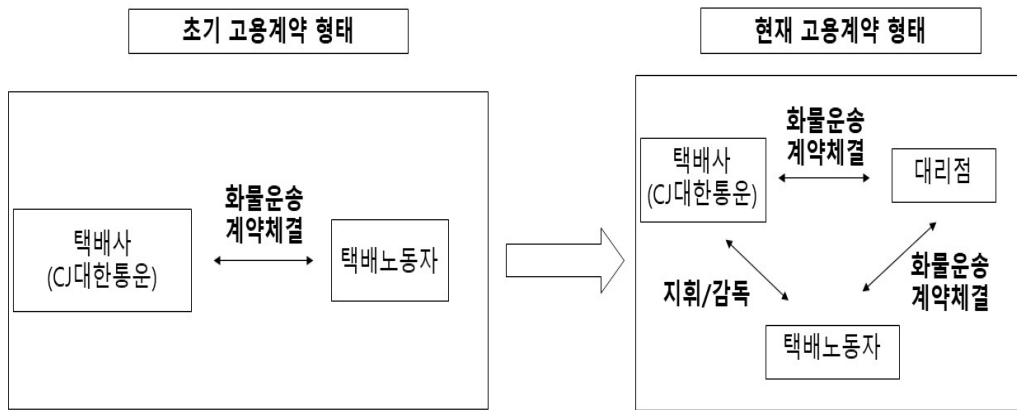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15	42	49
질병 사망	6	5	5
사고부상(90일이상)	44	171	188
사고사망	2	1	3
사고사망만인율	1.156	0.186	0.502
재해자수	46	172	191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012	0.002	0.005
재해율	0.266	0.32	0.32

(2) 사업구조 및 체계

택배업 종사자의 계약 관계는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어지는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체계¹⁵⁾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15) 우상범, 최서연, 박운 (2022)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연구총서, 2022:5

<https://m.earticle.net/Article/A426488>



[그림 III-3]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간 계약 관계

택배 서비스는 고객 주문 → 접수된 물품의 보관센터 집화 → 보관센터에 집화된 물품을 각 지역 서브터미널로 입고 →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서 모인 물품을 허브터미널로 입고시켜 검품 및 검수, 도착지별로 분류 → 허브터미널에서 분류된 물품을 각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배송지역별로 분류 → 고객에게 배송하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택배사들은 허브 및 서브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Hub & Spokes System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수집된 물품들을 분류하지 않고 중심(hub)이 되는 대형 물류창고(허브 터미널)에 모은 뒤 지역별로 다시 분류하여 보내는 시스템이다.¹⁶⁾

(3) 전속성

택배 업무를 하면서 검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16) 조선주 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5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응답자(대리점 대표)의 의견이었다. 평균적으로 1주 약 60시간 내외의 노동시간(일주일 6일, 하루 10시간 기준)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겸직을 하기 어렵고, 택배 기사에게 노무제공 시간 및 배송구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¹⁷⁾

3) 화물차주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화물차주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¹⁸⁾

〈표 III-5〉 화물차주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1,123	1,105	1,353
입직자 수	19,618	18,747	19,166

2019.12월 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등록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478,966대이며, 이 중 특고종사자 적용대상은 7.5만대 규모이다.¹⁹⁾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화물차주 산재 현황과

16) 조선주 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5

18) 근로복지공단, 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19)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운송 등록 자료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0명, 2021년 4명, 2022년 12명, 질병 사망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4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020년 25명, 2021년 102명, 2022년 133명, 사고사망 2020년 1명, 2021년 9명, 2022년 7명으로 파악된다.

〈표 Ⅲ-6〉 화물차주 산재 현황

(단위 : 명, %, ‰, %)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0	4	12
질병 사망	0	1	4
사고부상(90일이상)	25	102	133
사고사망	1	9	7
사고사망만인율	1.040	4.803	3.656
재해자수	23	111	140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01	0.048	0.037
재해율	0.239	0.037	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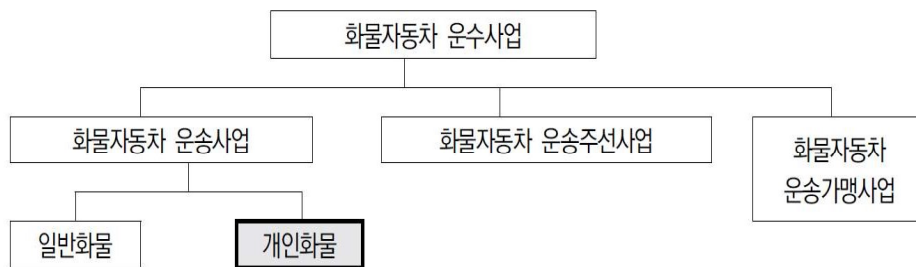
(2) 사업구조 및 체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크게 [화주 → 화물운송주선 사업자(필요에 따라) → 화물운송 사업자(직접운송 의무제 적용) → 화물차주[위·수탁 차주 (일명 ‘지입차주’) 또는 개인화물 차주]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체계²⁰⁾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

20)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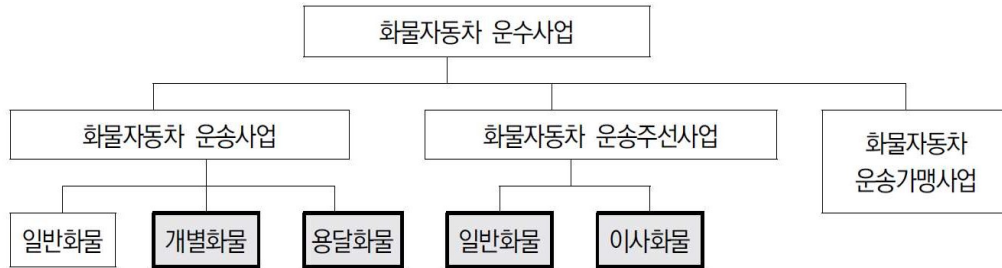
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7.1. 이전에는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이사화물 등 여러 업체를 통해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후에는 개인화물로써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화물차주의 경우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운수사업자에도 해당) 및 위수탁 차주(일명‘지입차주’)로 구성되어 있다. 위수탁 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차량을 현물 출자하고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명 ‘지입차주’)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아니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한다.

※ 일반화물 운송업의 경우 전체 화물차주 중 96%가 위수탁 차주인 것으로 조사²¹⁾



[그림 III-4] (2019.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체계

21)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그림 Ⅲ-5] (~2019.6.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체계

(3) 전속성

먼저 ‘지입차주’에 관한 대법원 판례²²⁾의 전속성 관련 내용을 보면, ‘지입차주인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회사와 위탁 차량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화물차주는 대부분이 위 사업구조와 같이 위임계약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화물차주의 전속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있다. ²³⁾

4) 대리운전기사

(1) 산업현황

2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 9062 판결.

23) 방준식.(2020).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노동법포럼,(31),79-104.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대리운전기사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18년부터 증가추세에서 2021년 감소 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다.²⁴⁾

〈표 Ⅲ-7〉 대리운전기사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24	26	31	8	35
입직자 수	8	18	10	12	55

또한,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 수(3,058개)와 업체당 운전자 수(80명)의 곱을 운전자 1인당 평균 등록업체 수(1.67개)로 나누어 대리운전업체에 가입된 총 운전자의 수를 구하고, 여기에 다시 업체 가입율 (0.89)로 나누어 업체에 가입 하지 않은 운전자의 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체 대리운전자 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대리운전기사의 규모는 약 164,600여명이었다.²⁵⁾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대리운전기사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질병 사망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사고사망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으로 파악된다.

24) 근로복지공단, 2018,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25) 박성희, (2020.04),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표 Ⅲ- 8〉 대리운전기사 산재 현황

(단위 :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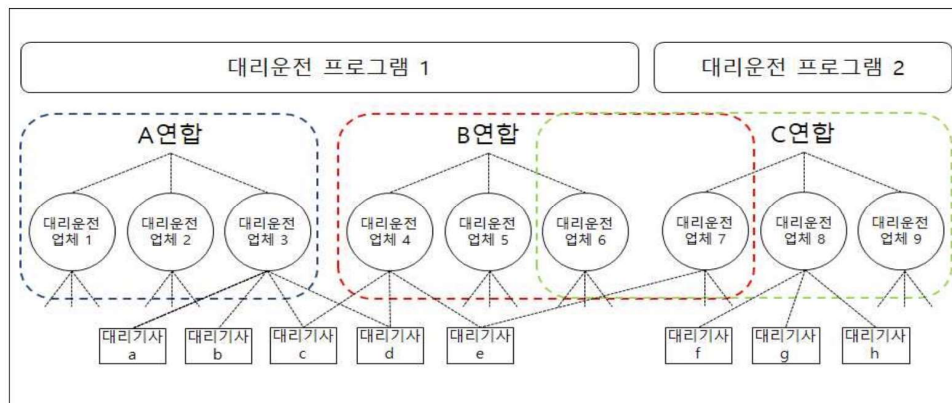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0	0	0
질병 사망	1	0	0
사고부상(90일이상)	0	0	0
사고사망	0	1	0
사고사망만인율	0.000	833.33	0.000
재해자수	0	1	0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	8.333	0
재해율	0	8.333	0

(2) 사업구조 및 체계

대리운전 시장 형태²⁶⁾를 보면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자, 대리운전 이용자 및 관제 프로그램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일명 콜이라고 불리는 콜 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주문을 접수하는 한편 대리운전자를 모집하여 등록·관리하고,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콜 정보와 관제 프로그램, 보험의 가입 및 관리, 운전자의 이동을 위한 셔틀 등을 제공한다. 관제 프로그램 업체는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받은 콜 정보(대리운전 이용자의 출발지, 목적지, 전화번호 등)를 이용자 인근의 대리운전자 또는 다수의 대리운전자에게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26)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속성 기준 마련 연구(국제노동법연구원, 2015)

그에 대한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는다.²⁷⁾ 또한 교통법규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른 대리운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기존 시장을 점유하던 콜 업체와 카카오와 같은 앱 방식의 신규 진입 업체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사 대상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사용료를 지불하고), 기존의 중계프로그램과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림 III-6] 대리운전 시장 형태

(3) 전속성

위 대리운전 시장의 구조 탓에 대리운전기사는 하나의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만, 여러 업체의 콜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승낙하고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업체가 기사에게 강제로 배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업체계 때문에 현재 대리운전기사 사업 구조상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과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전속성이

27) 박성희. (2020.04).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8)

5) 건설기계조종사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건설기계조종사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21년 감소 후 2022년 다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29)

〈표 Ⅲ-9〉 건설기계조종사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1,215	2,176	127	1,473
입직자 수	3,870	3,119	400	2,79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0년 건설기계조종사 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규모는 총 11,356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30) 또한, 현재 건설기계등록 및 자격증 취득자 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나, 이러한 통계가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종사자의 규모를 대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건설기계조종사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질병 사망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4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8) 박성희. (2020.04).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29) 근로복지공단, 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30)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조종사 정보현황_20201231, 행정안전부

2020년 142명, 2021년 139명, 2022년 150명, 사고사망 2020년 11명, 2021년 7명, 2022년 14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10〉 건설기계조종사 산재 현황

(단위 : 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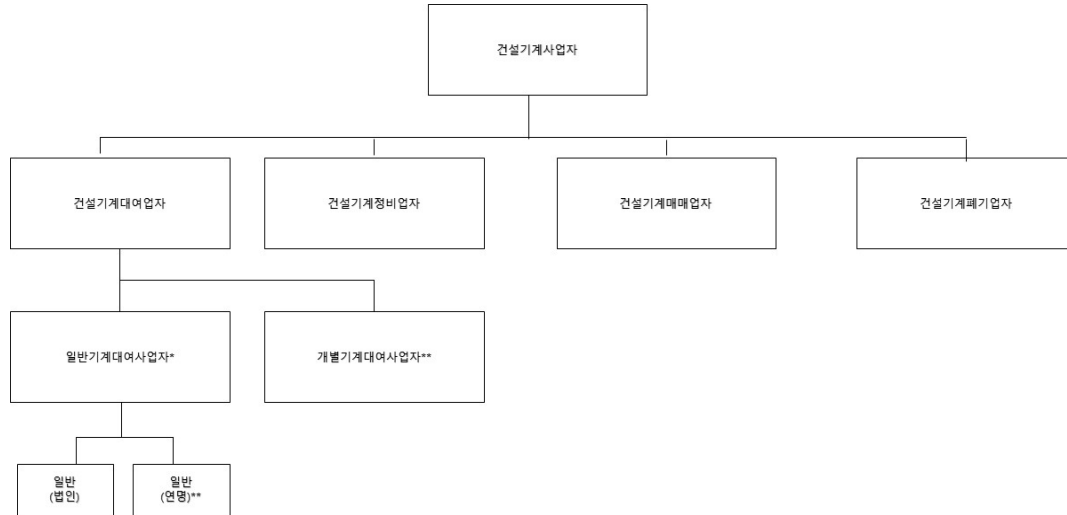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1	2	3
질병 사망	1	2	4
사고부상(90일이상)	142	139	150
사고사망	11	7	14
사고사망만인율	360.656	175.000	50.143
재해자수	151	146	164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3.607	1.75	0.501
재해율	49.508	36.5	5.874

(2) 사업구조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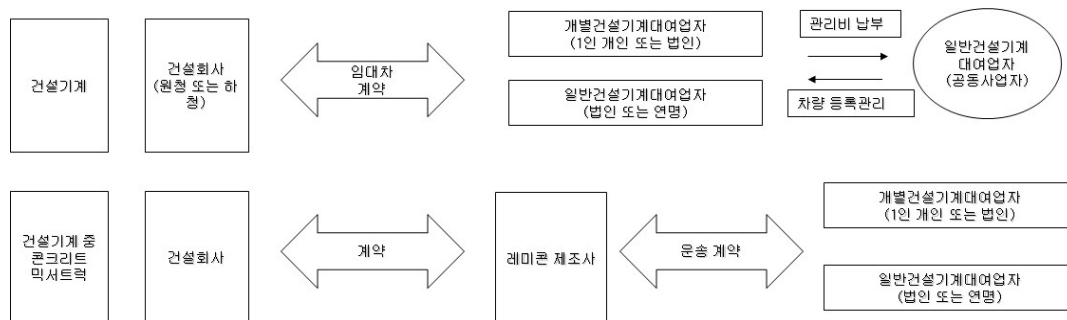
건설기계 사업은 건설기계대여업 계약 구조³¹⁾에 따른 사업구조를 띄고 있으며, 2019.1.1.부터 건설기계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 특고(콘크리트믹서, 트럭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지침 등을 시달하였다.

※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³²⁾

31)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그림 Ⅲ-7] 건설기계대여업 구조



[그림 Ⅲ-8] 건설기계대여업 계약 구조

건설기계(27종)의 사업유형 중 일반·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이며, 업종별로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형태가 건설업에 해당된다.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 운영과 관련된 주기장 문제해결, 각종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며 조종사에게는 소속회사

32)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관리회사)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중 다수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레미콘제조업체와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관련 주체는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노무를 제공받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에 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현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체라 할 수 있다.³³⁾

(3) 전속성

건설기계조종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를 대여(알선)업체에 지입하고, 연료비 기타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세금 및 보험도 사업주로서 스스로 부담하는 등 외관상 자영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종속적 자영업자형은 다른 근로자를 대체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대여업체에 전속성이 강하다고 본다.

알선업체와 같은 중개업자가 자영업자인 취업자를 사용사업주에 공급하고, 당해취업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경제적 의존이라는 고용 유사 관계가 있지만, 취업자가 중개업자나 사용사업주의 어느 누구와도 정식의 고용관계가 없는 유형인 중개형은 종속적 자영업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근로자를 대체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알선업체에 대한 전속성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기계 기종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소유한 건설기계이고, 노무제공에 있어서 복수의 사업체와 계약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하나의 사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33) 정지현, 방준식, 김기남, 노하영, 신용우, 이준호, 이승준, (2020).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건설기계의 종류(27종)에 따른 계약방식의 차이, 건설기계조종사의 장비 소유 여부, 현장의 규모에 따라 전속성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가 매우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한 건설사와 전속적으로 계약을 맺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대·월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전속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근로자의 계약 구조 및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 전속성의 높고 낮음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⁴⁾

6) 골프장 캐디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골프장 캐디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21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다.³⁵⁾

〈표 III-11〉 캐디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464	486	493	462	495
입직자 수	28,256	29,975	31,928	36,605	38,616

34) 정지현, 방준식, 김기남, 노하영, 신용우, 이준호, 이승준, (2020).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5) 근로복지공단, 2018,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2020년 기준 전국 캐디 종사자 수³⁶⁾는 골프장 수 증가로 3만5000명(마샬캐디, 운전캐디 포함)에 달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캐디 종사자 수는 3만 1,840명으로 5년 전인 2015년보다 24.1%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골프장 캐디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477명, 질병 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2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020년 5명, 2021년 69명, 2022년 0명, 사고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167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12〉 골프장 캐디 산재 현황

(단위 : 명, 1000, %)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1	1	2
질병 사망	0	0	0
사고부상(90일이상)	5	69	167
사고사망	0	0	0
사고사망만인율	0.000	0.000	0.000
재해자수	5	69	167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	0	0
재해율	0.35	0.194	0.45

36) 레저백서 202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23000050>

(2) 사업구조 및 체계

캐디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를 통한 소득은 오로지 내장객으로부터 받는 캐디피가 전부이다. 캐디는 골프장이 사업장이므로 골프클럽이나 리조트 등의 골프장에서 근무하는데 대부분의 골프장은 야외에 있으므로 겨울에는 춥거나 눈이 오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여 통상 12월~2월까지 3달 정도 휴장을 하며 휴장기에는 캐디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며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종사하는 노무제공 실태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캐디의 모집과 선발, 사업장 적응을 위한 교육, 사실상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는 규범(자치회 규약, 골프장 이용계약서 등)의 존재, 근로 제공의 장소와 시간, 캐디가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와 내용, 업무지시 및 관리 감독, 업무와 캐디피의 관계 등에 관한 모습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골프장에 가면 캐디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골프장이라는 사업장의 근로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캐디는 독립사업자로서의 특성이 사실상 없다.³⁷⁾

캐디의 근무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캐디는 1명이 1개월간 40경기를 담당한다.
- 한 경기는 약 4시간 30분 소요되고 하루에 1~2경기를 담당할 때도 있다.
- 캐디는 수습 기간 교육은 회사 입사 후 받게 된다.
- 수습 기간이 (약 4주~8주) 종결된 후 캐디로서 경기에 임하게 된다.
- 모든 골프경기는 예약제로 이루어지며, 캐디는 1~3일 후까지 경기 시간이 정해진다.³⁸⁾

37) 노호창. (2020).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학, (75), 99-139.

38) 한국골프캐디협회 http://www.k-caddie.com/html/sub2_4.html

캐디는 골프 라운딩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골프 규칙부터 캐디로서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해 배워야 일을 할 수 있다. 캐디 교육 훈련은 골프장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캐디 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 훈련을 시킨 후 정식으로 캐디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캐디 스쿨 등 사설학원이나 캐디협회 등에서 교육비를 받고 교육 훈련 후 골프장에 소개하여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4~8주 정도 교육 훈련을 받으면 캐디로서 필드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다만 어떤 골프장에 취업하든지 해당 골프장의 코스를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기타 조직 적응 등을 위해서는 그 골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신입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

캐디가 골프장에 취업하는 경우 계약형태는 골프장 소유자(사업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소유자로부터 골프장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와의 사이에서 골프장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골프장 소속의 경기팀(ex. 캐디 자치회)과 골프장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한다. 즉, 예컨대, ‘골프장 - 용역사 - 캐디’ 혹은 ‘골프장 - 자치회 - 캐디’의 구조이다.⁴⁰⁾

(3)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관점에서 보면, 캐디는 철저히 캐디피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내장객이라는 추상적 실체에 종속된 것이지 골프장 사업주에 종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하나의 골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중복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골프장 내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속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9) 한국골프캐디협회 http://www.k-caddie.com/html/sub2_4.html

40) 노호창. (2020).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학, (75), 99-139.

7) 방문판매원

(1) 산업현황

2012년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변형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와 별도로 후원방문 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방문판매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및 입직자 수는 2021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다.⁴¹⁾

〈표 Ⅲ-13〉 방문판매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2,050	5,413	9,269
입직자 수	74,922	83,476	83,528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후원방문 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총 853,128명이었다. 이는 전년(20년: 698,062명)보다 22.2%(155,066명) 증가한 것이다. 또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총 563,496명(전체 판매원 수 대비 66.1%)으로 전년(20년: 333,757명)보다 68.8%(229,739명) 증가하였다.⁴²⁾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방문판매원 산재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0명, 2021년 5명, 2022년 1명, 질병 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9명, 사고부상(90일 이상)

41) 근로복지공단, 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42) 김수주. (2022.11).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21명, 2021년 99명, 2022년 0명, 사고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92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14〉 방문판매원 산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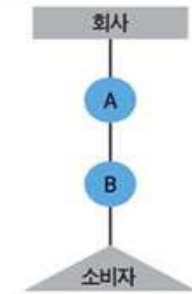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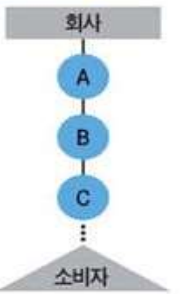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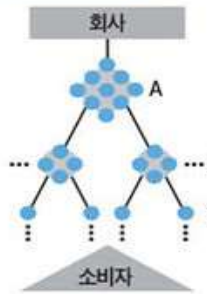
(단위 : 명, %, %)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0	5	9
질병 사망	0	0	0
사고부상(90일이상)	21	99	92
사고사망	0	0	0
사고사망만인율	0.000	0.000	0.000
재해자수	21	99	92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	0	0
재해율	0.056	0.119	0.11

(2) 사업구조 및 체계

방문판매의 사업구조는 개인사업자나 직원인 A를 통해 판매하고 A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해준다. A는 B를 하위판매원(2단계)으로 둘 수 있으며, B의 판매 실적이 올라가면 A, B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준다. 반면 후원 방문판매는 판매원 A는 B를, B는 C를 하위판매원(3단계 이상)으로 둘 수 있다. B의 판매가 늘면 A의 수당이 늘어나지만, C의 판매가 A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단계의 사업구조는 C의 판매가 늘면 A, B, C의 수당이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하위판매원이 늘수록 상위판매원의 수익이

급증하는 구조이다.⁴³⁾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방식	 • 회사는 개인사업자나 직원인 A를 통해 판매 A에게 판매수당 지급 • A는 B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 있음(2단계) 회사는 B의 판매가 늘 경우 A, B에게 수당지급	 • 회사는 판매원 A를 두며 A는 B를, B는 C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 있음 (3단계 이상) • B의 판매가 늘면 A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늘어나지만 C의 판매가 늘었다고 해서 A의 수당이 늘지 않음	 • 회사는 판매원 A를 두며 A는 B를, B는 C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 있음 (3단계 이상) • C의 판매가 늘면 A, B, C의 수당이 모두 증가 D의 판매가 늘면 A, B, C, D의 수당이 모두 증가 • 하위판매원이 늘수록 상위판매원의 수익이 급증하는 구조
현행	• 신고제, 공제조합 가입의무 없고 규제 덜함		• 등록제, 공제조합 가입 의무 규제 까다로움
개정안	• 변화 없음	• 등록제, 공제조합 가입의무 규제 까다로움 160만원 이상 제품 판매 금지	• 후원방문판매와 같음
유효트리선 규정 적용	• 적용 안함	• 기업매출 50% 이상이 최종소비자 통해 발생해야	• 적용 안함
대상기업	•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교원L&C, 대교 등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니베라,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등	• 74개 현행 다단계 업체

※대상기업은 달라질 수 있음

[그림 III-9] 방문판매원 등 사업구조

43) 고경봉, 안상미. (2019.4). 화장품·학습지 방문판매 50여만명 직격탄.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1030707031>

(3) 전속성

방문판매원의 경우 생계를 위해 여러 업체에 소속을 두고 제품을 판매할 유인이 강하며 주로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전속성이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을 가르는 근로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기준에서도 다단계판매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독자 사업 전개가 가능할뿐더러 회사로 하여금 업무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판매원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그 근거로는 최소 건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부당한 수당 되물림 같이 영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상당한 점, 방문판매 종사자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보다는 고객들은 ‘제품’ 자체에 유인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⁴⁴⁾

8) 대여제품방문점검원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의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⁴⁵⁾

44) NEXT ECONOMY(<http://www.nexteconomy.co.kr>)

4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표 Ⅲ-15〉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11	20	36
입직자 수	24,400	25,213	25,586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상 「가정용품임대업」 활동자 수가 2만명(2017년 기준)에 달하고 관련 렌탈업계에 의하면 2만 6천명(2018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은 법으로 정한 신고·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⁴⁶⁾ 이로 인해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산재 예방의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여 제품은 주로 소형 생활 가전이 많으나 최근에는 의류 건조기·안마의자와 같은 대형 가전 및 소파·침대 매트리스 등의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고 향후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방문판매원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1명, 2021년 8명, 2022년 12명, 질병 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020년 21명, 2021년 84명, 2022년 97명, 사고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으로 파악된다.

46)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47) 강찬규. 2020.12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종사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연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표 III-16〉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산재 현황

(단위 : 명, %, %)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1	8	12
질병 사망	0	0	0
사고부상(90일이상)	21	84	97
사고사망	0	0	0
사고사망만인율	0.000	0.000	0.000
재해자수	20	84	97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	0	0
재해율	0.088	0.333	0.379

(2) 사업구조 및 체계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종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면접 및 교육 후 교육 수료자 중 종사 희망자와 위촉 계약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교육 기간은 4일~1개월로 다양하며 교육 기간 동안의 수당을 정착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점검 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한하거나 근무 시간·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종사자 자율에 의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사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제품 청소 및 필터 등의 부품 교환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의 점검 일정과 업무량은 종사자 자율에 따른 점검과 종사자 1인당 고객 수와 1인 고객의 제품 수에 따라 업무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 전속성

일정 기간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고, 종사자의 대부분이 월 250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1일 9시간 이상 주5~6일의 근무를 함으로써 겹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간혹, 남성 종사자의 경우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저녁에 대리운전 또는 자영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속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⁴⁸⁾

9) 가전제품설치원

(1) 산업현황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가전제품설치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과 같이 사업장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입직자 수는 2022년 일부 감소하였다.⁴⁹⁾

〈표 Ⅲ-17〉 가전제품설치원 사업장 및 입직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2020	2021	2022
사업장 수	132	132	187
입직자 수	2,567	2,936	2,854

48) 전윤구.(21.10). 산업안전보건법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9) 근로복지공단, 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2022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가전설치업체 및 종사자 규모는 전체 종사자 수(보조기사 제외)는 9,288명으로 추산되나, 보조기사 없이 단독으로 배송 설치하는 종사자는 3,443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⁵⁰⁾

근로복지공단 특고종사자 통계 현황에 의하면 다음 가전제품설치원 산재 현황과 같이 질병이환(90일 이상)은 2020년 0명, 2021년 3명, 2022년 5명, 질병 사망 2022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사고부상(90일 이상) 2020년 0명, 2021년 10명, 2022년 15명, 사고사망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18〉 가전제품설치원 산재 현황

(단위 : 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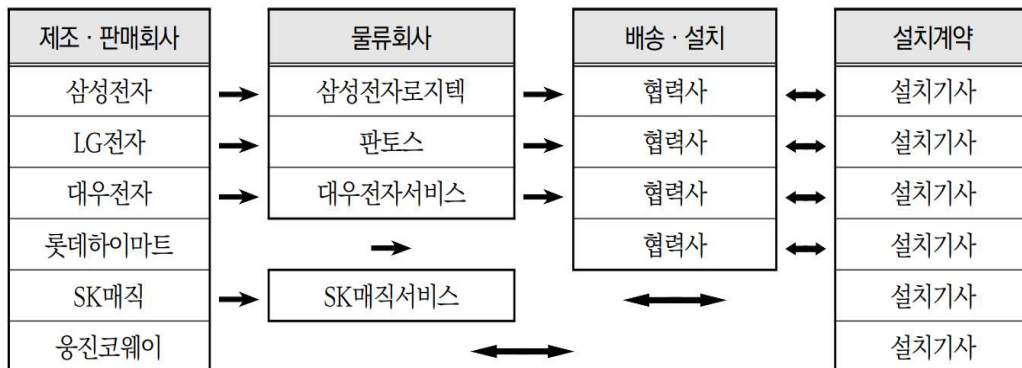
	2020	2021	2022
질병이환(90일 이상)	0	3	5
질병 사망	1	0	0
사고부상(90일이상)	0	10	15
사고사망	0	0	0
사고사망만인율	0.000	0.000	0.000
재해자수	0	10	15
업무상사고사망재해율	0	0	0
재해율	0	0.341	0.526

50)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2) 사업구조 및 체계

일반적으로는 제조 판매회사(삼성전자 등)-> 물류회사(삼성전자로지텍, 판토스 등)-> 배송 설치 협력사-> 가전제품설치원의 구조이다. 다만, 가전 회사별 사업구조를 보면 SK매직 등과 같이 배송 설치 협력사가 없는 등 가전제품 제조 판매사마다 사업구조는 다소 상이하다.

백화점은 특정 업체가 가전제품제조사와 계약 하에 전국 백화점에 가전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단계판매를 하고, 가전판매업체->제조회사->물류회사->배송 설치 협력사->가전제품설치원을 거친다. 인터넷 쇼핑몰은 G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은 제조회사의 물류회사가 배송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터넷 쇼핑몰 자체 물류체계 내에서 직접 배송 설치하기도 한다.⁵¹⁾



[그림 Ⅲ-10] 가전회사별 사업구조

(3) 전속성

가전제품설치원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다고 평가할

51)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수 있다. 설치원들의 경우, 판매직과 다르게 본인의 소속 회사의 제품의 설치 과정 및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설치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류센터에서 물량을 배정받은 이후 각 고객의 가정에 방문한다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코드를 발급받아야 물량 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전속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데, 이를 고려하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형태이며 다양한 사업장과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속 업체의 유니폼과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역시 검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클레임이나 고객 만족도 조사 평균을 이용하여 동행 및 교육 조치를 내리거나 본사에서 클레임을 관리하고 물류 소장에게 오더를 내리기 때문에 지시·감독이 존재한다. 업무수행 자체도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에 대한 재량이 약한 편임에 따라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라고 사료된다.⁵²⁾

52) 전윤구.(21.10). 산업안전보건법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 특고종사자 규모 : 교육대상 직종별로 전속성 폐지 시 예상되는 특고종사자 규모 파악

현재 특고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자의 집계를 위한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특고종사자 통계 자료 및 통계청의 각 직종별 통계 자료, 선행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토대로 각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자를 추정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의 특고종사자 추정치는 앞선 현황파악 자료와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 자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입직자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우 사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방문 및 유선 연락을 통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운수업 통계, 퀵서비스 운전자보고서, 건설기계 주요통계, 각 직종별 업계자료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모 추정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일시적 조사에 의한 자료의 경우 매년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음에 따라 데이터의 공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고 반영하고자 한다.

1) 특고종사자의 규모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각 직종별 입직자 수 및 해당 직종의 실제 종사자 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속성 폐지 시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고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각 통계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데이터의 공백이 발생하여

최근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2) 특고종사자의 규모 추정 결과

다음은 특고종사자의 규모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표 III-19〉 특고종사자의 규모 추정 결과

(단위 : 명)

	직종			2018	2019	2020	2021	2022
1	퀵서비스 기사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14,649	18,385	44,063	105,025	121,822
		통계청 자료 기준 ⁵⁴⁾	종사자 수	-	-	31,695	41,679	-
2	택배기사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14,649	17,100	36,171	53,739	59,709
		통계청 자료 기준 ⁵⁵⁾	종사자 수	41,376	45,306	-	-	-
3	화물차주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	-	19,618	18,747	19,166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⁵⁶⁾	종사자 수	-	75,000	-	-	-
4	대리운전 기사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8	18	10	12	55
		국토교통부 정책연구 자료 기준 ⁵⁷⁾	종사자 수	-	-	164,600	-	-
5	건설기계 조종사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	3,870	3,119	400	2,792
		-	종사자 수	-	-	-	-	-
6	골프장 캐디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28,256	29,975	31,928	36,605	38,616
		업계통계 자료 기준 ⁵⁸⁾	종사자 수	28,256	30,808	31,840	-	-

53) 근로복지공단, 2018,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54)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직종			2018	2019	2020	2021	2022
7	방문 판매원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	-	74,922	83,476	83,528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 기준 ⁵⁹⁾	종사자 수	-	-	-	563,496	-
8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	-	24,400	25,213	25,586
		근로복지 공단 업무 매뉴얼 기준 ⁶⁰⁾	종사자 수	26,000	-	-	-	-
9	가전제품 설치원	근로복지 공단 기준 ⁵³⁾	입직자 수	-	-	2,567	2,936	2,854
		근로복지 공단 업무 매뉴얼 기준 ⁶¹⁾	종사자 수	9,288	-	-	-	-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기반으로 한 입직자는 총 354,128명이며, 추정값으로 도출된 실제 종사자의 수는 총 960,001명으로 확인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타 통계자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입직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특고종사자의 수는 급증하였고, 이를 적용할 경우 실제 규모는 추정값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

55) 통계청. 운수업 조사 결과. 2020. 12. 8.

56)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운송 등록 자료

57) 박성희, (2020.04),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58) 레저백서 2021

59) 김수주. (2022.11).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60)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61)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3. 소결

특고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0〉 2022년 직종별 특고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직종	규모 (입직자 기준)	산업재해 빈도 (사망사고기준)	전속성
1	퀵서비스기사	121,822	39	낮음
2	택배기사	59,709	3	높음
3	화물차주	19,166	7	낮음
4	대리운전기사	55	0	낮음
5	건설기계조종사	2,792	14	보통 (기계에 따라 상이)
6	골프장캐디	38,616	0	높음
7	방문판매원	83,528	0	높음
8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5,586	0	높음
9	가전제품설치원	2,854	0	높음

특고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추후 직종이 추가될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종사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직자 기준 사망만인율이 높은 직종은 퀵서비스기사(3.202), 택배기사(0.502), 화물차주(3.656), 건설기계조종사(50.143)으로, 안전보건교육의 강화가

요구되는 직종이라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있다. 하지만 사망만인율이 높은 직종 중 퀵서비스 기사와 화물차주는 전속성이 낮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주의 확인이 어렵고, 따라서 사업주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대리운전기사 또한 전속성이 낮은 직종으로, 위 3개의 직종은 최근 플랫폼의 활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주로 플랫폼 접속 시 1분 이내의 짧은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고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직종이 다양하고, 직종별 특성이 상이하기에 통일된 하나의 제도를 통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그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각 직종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IV.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법령 분석



IV.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법령 분석

1. 특고종사자(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조사

1) 국외 특고종사자 관련 법규

(1) 독일

가) 특고종사자의 정의

전통적인 노동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 개념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인적 종속성 결여로 근로자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지만,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제3의 노무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개별 입법을 통해 ‘근로자와 유사한 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⁶²⁾, 산업안전보호의 근거법인 산안법은 그 적용대상을 "취업자" (Beschäftigte), 즉 근로자, 직업훈련생, 근로자와 유사한 자, 가내 도급취업자 및 그와 동등한 자, 공무원, 판사, 군인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등으로 하고 있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우선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취업자들이 안전장비(헬멧 및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야 하고, 장·단기적으로 유해한 환경(유해물질, 소음,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취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62) ‘근로자와 유사한 자’는 노동법원법,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보편평등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로 법률에 개념 정의를 두고 구체적 요건으로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명시한 것은 단체협약법 제12조a임

산안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연방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 관련 특별규정(Arbeitsschutzverordnungen)을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12개의 안전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그밖에 재해보험조합인 직업조합(BG)들은 각 산업 분야(영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 등) 별 재해보험가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재해 예방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산업분야 별 직업조합들이 제정한 수많은 재해 예방규칙들(Unfallverhütungsvorschriften)이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최근 독일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산업 분야이기도 하지만, 종사자들의 지위와 관련 자영업과 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논란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안법이 보호대상을 "취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최근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클라우드 노동이 등장하면서 산업안전보호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그중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 디맨드 워크의 종사자들은 산안법이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터치 하나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면의 클라우드 워커들이다. 클라우드 워커의 경우 근로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만큼 산업안전보호 역시 상당 부분 당사자의 책임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또는 산업안전보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논란이 많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특고종사자 관련 근거법

독일 산안법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나, 가내 작업

취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해 두고 있다.⁶³⁾

사용자는 ‘취업자’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한 최대한로 제어함으로써 가장 위험이 낮은 상태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로 조직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험의 제거는 그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하며 현존하는 노동의학, 기술, 학술적 차원에서 확립된 이론에 토대를 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함에 있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작업방식, 작업장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연계시켜야 한다. (법 제4조) 또한 사법적계약관계(privatrechtlicher Vertrag)에 기초한 관계의 당사자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군역 대체 복무근로자나 수감자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적 계약 관계의 주된 급부 내용은 노무의 제공에 관한 것(Dienstvertrag) 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의무자가 그 노무 제공 지시자에게 사회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⁶⁴⁾는 1996년 고용권리법의 조항들은 대부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근로자에 대한 자의적 임금 공제 금지 규정(Part II of the Act)은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12a

○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된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근로자와 유사한 자’)로서, 고용계약 혹은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의 도움 없이 행하는 경우, a) 주로 한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b) 평균적으로 영리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63) 전윤구(2021.10). 산업안전보건법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64) 독일 민법 제 611조

사람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산정에 있어서 직전 6개월, 이보다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된다.

- 근로자와 유사한 자를 고용한 제1호에 열거된 자 및 이들과 근로자와 유사한 자 간에 고용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성립된 법률관계.

-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복수의 자가 기업집단(콘체른)의 형태로 결합 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 간에 성립된 조직공동체 혹은 일시적이지 않은 공동사업체에 속해 있는 경우에 이들은 1인으로 본다.

- 예술, 저술, 저널활동을 하는 자 및 그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b)의 전단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평균적으로 영리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소득의 3분의 1이 한 사람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 이 규정은 상법 제84조의 대리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5 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현업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및 직업훈련을 받고있는 자를 말한다. 가내 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가내근로법」(제1조), 기타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되는 자도 근로자로 본다. 법률, 정관 또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단독으로 또는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법인 또는 인적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는, 그 법인 또는 인적 공동체의 사업 내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생략)

- 대리상은 그가 「상법」 제92a조에 의해 기업이 행하는 계약상의 급부 하한이 확정될 수 있는 자에 속하고 또한 계약 관계의 최근 6개월 동안,

그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수수료 및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변상을 포함하여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지불된 보수가 매월 평균 1,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본다. 연방 노동·사회부와 연방 법무부는 연방 경제·기술부와의 합의로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도 법규명령으로 제1문에 정해진 보수의 한도를 당시의 임금과 물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 특고종사자의 안전교육

독일 법체계는 정부(연방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DGUV :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산재 예방 활동을 관리·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근로자에게 각각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장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교육

- ① 사용자는 취업자에게 근로 제공시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하여 근로시간 중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취업자의 업무수행 장소 또는 업무 범위에 초점을 맞춘 지시와 설명을 포함한다. 채용 업무 범위의 변경 새로운 작업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취업자의 업무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능력 및 경험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기타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고 필요 시 정기적으로 반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사업주에 교육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과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조치나 설비, 응급처치 및 비상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최초 작업 전이나 작업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법전(SGB : Sozialgesetzbuch)에서는 DGUV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GB VIII 제24조에 DGUV이 사업장 내 산재 예방 조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법에 따른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기타 산업안전 전문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DGUV에서 부담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23조 양성훈련과 심화훈련

- ①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사업장에서 노동재해, 직업병과 직무 관련 건강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과 응급조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성훈련과 심화훈련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사업장의사, 안전기술자와 기타 노동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업장의사와 노동안전 전문인력으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양성 또는 심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산재보험운영기관들은 양성훈련 및 심화훈련 조치들의 직접적인 비용과 이에 필요한 교통비와 숙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해 시행되는 응급조치 요원을 위한 양성훈련과 심화훈련의 경우에는 재해보험 운영기관이 교육비만 부담해야 한다.
- ③ 교육과정 참가로 인하여 결근이 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계속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안전요원과 노동안전 전문인력 교육인 경우에는 노동안전을 관할하는 주 관청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독일은 연방 및 주정부의 교육담당 부서에서 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직접적인 교육은 산재보험조합이 수행한다. 산업재해 예방·보상·재활업무를 통합 수행을 위하여 DGUV 교육센터(IAG: Institut für Arbeit und Gesundheit)를 설립하여 전문화된 실습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AG에서의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안전보건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여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 교육은 산업별 BG(Berufsgenossenschaft)에서 수행하고 BG에서의 안전감독관, 안전보건 전문가, 주정부 안전담당자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IAG 안전보건교육 현황〉

1. 모든 교육과정은 산재보험조합 회원사에게 무료 제공
2.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든 교육과정에 세미나 형식의 교육이 포함
 - 체험이 필요한 경우 교육센터 보유 실습장비(18개)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실시
3. 실습형 교육은 해당 분야 기능장 수준의 전문가가 교육생과 쏘 과정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운영

독일의 대표적인 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DGUV 산하기관인 드레스덴 교육센터(IAG)가 있다. IAG의 모든 교육과정은 DGUV 회원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은 DGUV에서 매년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DGUV는 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된다. IAG의 전문인력은 대부분 박사급인 연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연구와 교육 및 상담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안전보건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기준 IAG에서는 예방 전문가 교육과정, 강사 자격 과정, 산업안전분야 학위 과정 등 총 158개 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⁶⁵⁾

- 교육과정 사례

DGUV 산하 드레스덴 교육원의 교육대상으로는 안전관리자, 직업병 전문가, OSH 전문가 및 강사, 산재보험조합 기술감독관 및 산재보험조합 회원사 소속 근로자, 교육기관 및 컨퍼런스 운영자가 있고, 연간 340회 교육 및 220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연간 약 11,000명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회원사에 대해서는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2017년 IAG 교육과정〉

- 예방전문가 자격과정(61개 과정)
 - 감독자 교육과정(18개 과정)
 - 감독자 계속 교육과정(34개 과정)
 -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IFA) 교육(9개 과정)
- 산업안전분야 석사학위 과정(1개 과정)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경력근로자 자격과정(10개 과정)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과정(5개 과정)
 -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전문과정(5개 과정)
- 강사 자격과정(38개 과정)
 - 강사 기술 (4개 과정)
 - 강사 기술: 기초과정(8개 과정)
 - 강사 기술: 고급과정(12개 과정)
 - 개별상황 강사과정(3개 과정)
 - 강사 인증 자격 대비 과정(2개 과정)
 - 학습 가이드 과정(1개 과정)
 - 강사 교습, 인턴 및 협동 교육과정(6개 과정)
 - 고급 세미나 코칭 과정(2개 과정)
- 예방 전문분야 과정(32개 과정)
 - 임원 및 전문가 과정(5개 과정)
 - 법적 요구사항 및 작업환경 평가 과정(9개 과정)
 - 사업장 내 운송 및 도로 안전과정(1개 과정)
 - 건강관리, 건강증진 과정(14개 과정)
 - 인구통계학(고령) 변화 과정(3개 과정)

65)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Available at <http://dguv.de/iag>

주요 교육·훈련 분야로는 조사관을 위한 3일 안전보건 종합코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과정, 사고 예방 과정, 인간공학 및 분야별 안전보건 강사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142개 과정이 운영되었다.

이 외에도 감독자 교육과정(18개 과정), 감독자 계속 교육과정(34개 과정),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IFA) 교육 (9개 과정), 산업안전 분야 석사학위과정 (1개 과정), 작업장 안전을 위한 과정 (5개 과정),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전문과정 (5개 과정), 강사 기술 (4개 과정), 강사 기술: 기초과정 (8개 과정), 강사 기술: 고급과정 (12개 과정), 개별상황 강사과정 (3개 과정), 강사 인증 자격 대비 과정 (2개 과정), 학습 가이드 과정 (1개 과정), 강사 교습, 인턴 및 협동 교육과정 (6개 과정), 고급 세미나 코칭 과정 (2개 과정), 임원 및 전문가 과정 (5개 과정), 법적 요구사항 및 작업환경 평가 과정 (9개 과정), 사업장 내 운송 및 도로 안전과정 (1개 과정), 건강관리, 건강증진 과정 (14개 과정), 인구통계학(고령) 변화 과정 (3개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독일의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감독 및 처벌은 정부(연방 및 주정 부)의 「독일 산안법」과 DGUV의 SGB로 구분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독일 산안법」에 따라 제정된 「독일 산안법 시행령」의 교육의무를 위반하거나 법 제22조 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지시한 산재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2만5천 유로, 근로자는 5천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관청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행령 및 관할관청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DGUV의 SGB VII에 따라 기술 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규칙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만유로의 과태를 부과한다.

(2) 영국

가) 특고종사자의 정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1974)에서 노무('work')는 근로자(employee) 혹은 자영업자로서의 노무를 모두 포함한다(제52조 제1항(a)). 여기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자이다(제53조 제1항).

1996년 고용권리법은 노무 제공자의 개념 또한 제시하고 있다. 노무 제공자란 "근로계약 혹은 (b)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가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이 명시적이라면)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개인이 수행하는 직업 혹은 사업 (business undertaking)의 고객의 지위가 아닌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노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어떤 다른 형태라도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 계약 하에서 일하는 개인"(제230조 제3항)을 말한다.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노무 제공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노무 제공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이외에도 역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을 맺고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 중 그 역무를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나) 특고종사자 관련 근거법

제3조 제1항: 사용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들 (persons not in his employment who maybe affected thereby) 이 사업 수행에 의해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의 의무이다.

제3조제2항: 자영자(self-employed person)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와 그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업 수행에 의해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모든 자영자의 의무이다.

노동관계 (통합) 법은 다수가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우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노무 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전부 혹은 주로 노무 제공자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규정한다(제1조).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관련 노동분쟁에 적용되는데, 그러한 노동분쟁은 “노무 제공자와 그의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말한다(제244조). 관련하여 노동조합 인정절차와 관련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부칙A1 제1조)와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46조)가 노무 제공자에게 보장된다. 그렇지만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제237조~ 제238A조). 1999년 고용관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조력자의 참가를 받을 권리는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된다(제13조).

노무 제공자에게로 보호를 확대하고 있는 법률은 한국의 최저임금법과 유사한 1998년 최저임금법(the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지침을 이행하는 법률인 1998년 근로시간 시행령(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이행하는 법인 2000년 단시간 노무 제공자(덜 우호적인 대우 금지) 시행령(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차별금지법률로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이행하는 법률인 2010년 파견 노무 제공자 시행령(the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은 모두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다) 특고종사자의 안전교육

영국 법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HSWAct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⁶⁶⁾, 안전보건규정, 실행지침 및 안내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다. HSWAct는 의회에서 제정하고 안전보건규정은 보건안전청(HSE :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제정하고 HSWAct 제 50조 1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규정 제정권이 부여된다. 실행지침의 제정과 시행은 HSWAct 제16조 1항에 따라 HSE에 부여하되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행지침을 단순히 미이행한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경우 실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법정에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다. 또한, 안내지침은 실행지침을 보완하는 자료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관련 법령은 HSWAct 제2조 2항(C)에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포괄적으로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규정에서는 작업 안전관리 규정, 시설 장비 안전관리 규정, 사업장 안전관리 일반 규정 등 각 규정의 목적에 따라 교육대상 및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보건안전 관리규정 제 13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채용자, 업무 내용 변경 시, 새로운 장비 도입 · 교체 시, 새로운 기술 · 작업시스템 도입 또는 시스템 교체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적절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위험성이 변경 또는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때는 근무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6) UK,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2016.

〈표 IV-1〉 영국 안전보건교육 근거법령

근거법령	주요내용
HSW Act 1974 (작업장보건 안전법)	〈2조 2항〉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규정
	〈2조 2항〉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c)이러한 정보, 교육, 훈련 및 감독의 제공은 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Manageme 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사업장보건 안전 관리규칙)	제13조 2항~3항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신입직원일 때, 근로자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혹은 책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작업 시 위험 요소가 증가했을 때 또한, 교육은 적절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실시되어야 하고,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실시하되 근무시간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
	〈13조 2항〉 모든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가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a)「사업주에게 신규 채용된 사람에게」 (b) 아래의 이유로 새롭게나 증대된 위험성에 노출될 때 (i) 사업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 변경되었을 때 (ii) 사업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작업 장비의 도입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작업 장비의 교체 시 (iii) 사업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iv) 사업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작업시스템이 도입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작업시스템의 교체 시 〈13조 3항〉 교육은 다음 문단을 참조한다. (a) 적절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b)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때, 그리고 (c)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HSWAct을 집행하는 기관은 HSE이며, 법규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사고조사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와 별도로 민간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⁶⁷⁾ 안전보건규정에서는 교육내용의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각 교육기관별 자체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영국표준협회(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정하는 BS(British Standard)코드를 참조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인 IOSH와 BSC의 교육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IOSH는 산업안전 보건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지원은 없으며 회비 및 교육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2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 및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을 민간 교육기관에 유상으로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3가지 세부 교육과정은 안전한 작업과정, 안전한 관리과정, 전문화 교육과정이 있다. 각 교육 강사는 국가 자격인증 레벨3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자격자가 강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85~£850까지 과정별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⁶⁸⁾ BSC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관운영은 정부 지원 없이 교육 수입, 감사 및 자문, 자격업무 수입, 인증 수입, 투자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3개 분야별 34개의 교육과정을 연중 개설하여 연간 약 10만 명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업무로는 NEBOSH와 IOSH로부터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안전보건에 대한 학점변환체제인 “자격과 학점연계”를 적용받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⁶⁹⁾

67)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ailable at <http://www.hse.gov.uk>

68)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vailable at <http://www.iosh.co.uk>

(3) 일본

가) 특고종사자의 정의

일본의 특고종사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래부터 독립된 자영업자로서 ‘위탁형 취업자’로 분류 ‘위탁형 취업자’는 대체로 업무위탁 또는 도급 등 근로계약 이외의 노무 제공계약 하에서 보수를 목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로 개인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⁷⁰⁾, 특고종사자에 대한 개념을 법령상에서 별도로 정의 내리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원 및 행정사례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이 없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근로자성의 인정에 있어 ①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해 지휘 감독이 행하여지는 것, ②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미리 지정되어 출근부로 관리되고 있는 것, ③다른 사람에게 배송 업무의 위탁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 ④보수의 기본능률급이 결근 등에 따라 가감되는 것, ⑤독자적 상호의 사용이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특고종사자 관련 근거법

법규준수를 담당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선결과제로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 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⁷¹⁾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노안법 제3조 제1항).⁷²⁾

69) British Safety Council, Available at <http://www.britsafe.org>

70) 鎌田耕一, 個人請負・業務委託型就業者をめぐる法政策, 季刊労働法 241号, 2013, 57頁.

71) 노상헌, “사내하도급·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제 -일본 법령의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48, 2016, 92면

일본의 노안법은 그 외에도 사업주 이외의 자(예컨대 설비를 설계 및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방지 대책 정비와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한편(노안법 제3조 제2항), 건설공사의 도급인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방해하여 산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노안법 제3조 제3항).

후자에 더해 최근 증가하는 제조업 사내하도급과 같이 원청사업주의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혼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 원청사업주에게 작업 간 연락 조정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노안법 제30조의 2).

다) 특고종사자의 안전교육⁷³⁾

일본의 법체계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안전위생법(이하 「노안법」)과 노동안전위생 규칙(이하 「노안법 규칙」)에 근거한다.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신규채용 시 교육(제59조 1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59조 2항), 유해 업무에 종사 시 실시하는 특별교육(제59조 3항), 직장교육(60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안법 규칙」 제4장 안전위생교육을 살펴보면 신규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35조), 특별교육(제36조 제39조), 직장교육(제40조)에서는 해당 업무의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조향은 아래와 같다.

- 노동안전위생법

72)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은 산재 예방을 위한 방대한 시행령과 상세한 규칙을 두고 있다. 노안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규범화하고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후생노동성의 성과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73) 최서연, 조기홍, 박현아(2020).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적정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59조)

1.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준용한다.
3. 사업자는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곳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업종이 시행령에 정하는 것에 해당될 때에는 새로운 직무를 하게 되는 직장, 기타 작업 중 근로자를 직접 지도 또는 감독하는 자(작업주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작업방법의 결정 및 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것
- (2) 근로자에 대한 지도 또는 감독의 방법에 관한 것
- (3) 전 2호에 게시하는 외에 노동재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의 2)

1. 사업자는 전 2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그 사업장의 안전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현장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후생노동대신은 전 항의 교육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실시하도록 필요한 지침을 공표한다.
- 3 후생노동대신은 전 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노동안전위생규칙

(신규채용 시의 교육, 제35조)

사업자는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노동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지체 없이 다음 사항 중 해당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혹은 위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노동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게재된 업종의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원재료 등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및 이들 취급방법에 관한 것
2. 안전장치, 유해물 억제장치 또는 보호구 성능 및 이들 취급방법에 관한 것
3. 작업순서에 관한 것
4. 작업 개시시의 점검에 관한 것
5. 해당 업무에 관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한 것
6.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에 관한 것

7. 사고 시 응급조치 및 회피에 관한 것
8. 앞의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 혹은 위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자는 전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은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해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무)
제36조 노동안전위생법 제59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위험 혹은 유해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생략)
(특별교육 과목 생략)
제37조 사업자는 노동안전위생법 제59조 제3항의 특별 교육과목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과목에 대한 특별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특별교육의 기록 보존)
제38조 사업자는 특별교육을 행했을 때에는 해당 특별교육의 수강자, 과목 등의 기록을 작성하여 이것을 3년간 보존해 두어야 한다.
(특별교육의 세부사항)
제39조 앞의 2조(37조, 38조) 및 제592조 7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 제36조 제1호부터 제13 호까지 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6호까지 기재된 업무에 관련된 특별교육의 실시 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다.
(직장 등의 교육)
제40조 노동안전위생법 제60조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노동안전위생법 제28조의 2 제2항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및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강구할 조치에 관한 것
2.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에 관한 것
3. 기타 현장감독자로서 행해야 할 노동재해방지 활동에 관한 것
- 법 제60조 안전 혹은 위생을 위한 교육은 다음표의 상단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같은 표의 하단에 기재된 시간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표 IV-2〉 일본 안전보건교육 시간

사항	시간
노동안전위생법 제 60조 제1호에 기재된 사항	
1. 작업수순을 정하는 방식	2시간
2. 노동자의 적절한 배치 방법	
노동안전위생법 제 60조 제2호에 기재된 사항	2.5시간

사항	시간
1. 지도 및 교육 방법 2. 작업 중에서의 감독 및 지시 방법	
전항 제1호에 기재된 사항 1.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방법 2.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강구할 조치 3. 설비, 작업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법	4시간
전항 제2호에 기재된 사항 1. 이상 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조치	1.5시간
전항 제3호에 기재된 사항 1. 작업에 관련된 설비 및 작업장소의 보수관리 방법 2. 노동재해방지에 대한 관심 유지 및 노동자의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내는 방법	2시간
3. 사업자는 전항의 표 상단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에 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 관리체계

「노안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업종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신규로 직무를 담당하는 직장(長) 등 작업 중인 근로자를 직접 지도나 감독하는 자(작업주임자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후생노동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또는 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 타 법령에 의한 유사교육제도

현재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다.

〈표 IV-3〉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그 외에 각 직종별로 적용되는 타 법령에 따른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직종은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화물차주가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택배기사 및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 IV-4〉 (타 법령에 의한 유사교육제도)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교육 이수 의무 있는 경우, 산안법상 교육의무 제외를 위해 조사

직종	구분	관계 법령	법령 내용
건설 기계 조종 사	교육 의무	건설기계 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의 대상·내용·방법·시기 및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대상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교육 주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 내용 및 시간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 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table><tr><th>과목</th><th>교육내용</th><th>교육 시간</th></tr><tr><td>가. 건설기계 관 련 법령 이해</td><td>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 사의 역할과 의무</td><td>1시간</td></tr><tr><td>나. 건설기계의 구조</td><td>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td><td>1시간</td></tr><tr><td>다. 건설기계 작 업 안전</td><td>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td><td>1시간</td></tr><tr><td>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td><td>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td><td>1시간</td></tr><tr><td colspan="2">총 계</td><td>4시간</td></tr></table>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가. 건설기계 관 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 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건설기계 작 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가. 건설기계 관 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 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건설기계 작 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table><tr><th>과목</th><th>교육내용</th><th>교육 시간</th></tr><tr><td>가. 건설기계 관 련 법령 이해</td><td>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td><td>1시간</td></tr><tr><td>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 계의 구조</td><td>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td><td>1시간</td></tr></table>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가. 건설기계 관 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 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1시간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가. 건설기계 관 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 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1시간																		

		<table border="1"> <tr> <td></td><td>3) 방호 및 안전장치</td><td></td></tr> <tr> <td>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 계의 작업 안 전</td><td>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td><td>1시간</td></tr> <tr> <td>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td><td>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td><td>1시간</td></tr> <tr> <td colspan="2">총 계</td><td>4시간</td></tr> </table>		3) 방호 및 안전장치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 계의 작업 안 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3) 방호 및 안전장치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 계의 작업 안 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비고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 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교육 방법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비고 5. 안전교육등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교육 기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춘 것												

골프 장 캐디	교육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	산안법 적용
택배 기사	교육 의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대상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교육 주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 및 시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교육 방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시·도의 조례에서는 교육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 교통연수원에서 집합교육형태로 운영 중
	교육 기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도의 조례에서는 각 시·도별 교통연수원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	교육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	산안법 적용
대리운전 기사	교육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	산안법 적용
방문 판매원	교육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	산안법 적용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교육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	산안법 적용

가전 제품 설치 원	교육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	산안법 적용
화물 차주	교육 사항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시행 규칙	위 택배기사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

3. 소결

해외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경우 유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한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신분을 확정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노무 제공자’의 개념에 포괄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아직 특고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논된 것이 불분명한 실정이고,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국가들은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양성 혹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V-5〉 국외의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독일	영국	일본
특고종사자 법적 정의 여부	유사근로자	X	X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관련 법령 제정 여부	X	X	X
교육운영실태	‘취업자’로 통합운영	‘노무제공자’로 통합운영	‘근로자’로 통합운영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른 제외대상이 존재			

이러한 시점에 국내 타 법령에서는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화물차주)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해당 직종에 국한된 한정적인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4장의 5.직종별 안전보건교육 교육 운영실태 파악 결과 참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각 직종별 안전보건교육이 별도로 구성되고,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집중력 저하, 동기부여의 저감 등으로 교육효과의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이 부족하고 그 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는 전문강사들이 협회나 민간기관에서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한국은 이런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강사의 육성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1. 목적

본 조사는 특고종사자의 특성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노무 제공 형태, 안전보건교육 현황, 안전보건교육 효과 및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향후 특고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1) 설문조사

(1) 설문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9종,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의 종사자로, 해당 종사자들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의 특고종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300명

(2) 설문방법 : 온라인 자기 기입식 비대면 조사

(3) 설문내용

- 사업자등록 여부, 소속회사 유무, 계약형태, 노무 제공형태, 중복계약의 수 등
- 사고 경험 여부, 사고원인 및 노출 정도,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대한 인지도 및 이수 시 교육시간과 교육형태, 인터넷교육센터의 안전보건

교육 인지 경로 등

-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여부 및 효과성 수준,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방법, 개선 요구사항, 인터넷 원격교육의 효과성 및 개선요구사항, 비용 발생 시 부담 주체 및 이수 의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시 효과 여부 등
- (4) 설문조사 분석 : SPSS 21.0을 이용한 통계분석
- (5) 생명윤리심의승인
- 설문조사는 설문지 구성 후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한서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후 진행

2) 간담회 기반 면담조사

- (1) 면담대상 : 각 직종별 종사자, 관련 협회 및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 등 72인
- (2) 면담조사 방법 : 조사 대상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 (3) 면담내용 : 설문조사 관련 상세 내용 조사

3) 조사 결과 기반 5개 문항 비대면 설문조사

- (1) 설문대상 : 23년 9월 12일~10월 06일까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특고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특고종사자 총 6,088명
- (2) 설문방법 : 온라인 자기 기입식 비대면 조사
- (3) 설문내용 : 조사결과 기반 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내용 (안전보건교육 참여 확대 방안, 안전보건 교육 시 고민 사항,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과 유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 비용지원 시 교육 참여 의향)

3. 설문조사 결과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72.3%로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31~40세 이하 43.0%, 41~50세 이하 32.3%로 높게 나타났고, 51세 이상의 경우도 16.0%로 나타났다.
- 직종은 건설기계조종사 60명 20%를 차지하였으며,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의 직종은 각 30명 10.0%를 차지하였다.
- 사업장 소속 종사자는 84.0%로 5인 미만 23.0%, 5~49인 27.3%로 50.3%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으며, 16.0%는 소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위는 개인사업자가 32.7%, 관리자 12.0%, 종사자 55.3%로 나타났고, 전체 업무 경력은 1~5년 미만 30.3%, 5~10년 미만 22.0%, 10년 이상은 33.3%로 나타났고, 현 업무 경력은 1년 미만 19.7%, 1~5년 미만 47.0%로 나타났다.

〈표 V-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

구분		빈도	빈도율
성별	남성	217	72.3
	여성	83	27.7
연령	30세 이하	26	8.7
	31~40세 이하	129	43.0
	41~50세 이하	97	32.3
	51~60세 이하	35	11.7
	61세 이상	13	4.3
직종	건설기계조종사	60	20.0
	골프장 캐디	30	10.0
	택배기사	30	10.0
	퀵서비스기사	30	10.0
	대리운전기사	30	10.0
	방문판매원	30	1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0	10.0
	가전제품설치원	30	10.0
	화물차주	30	10.0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69	23.0
	5~49인	82	27.3
	50~99인	25	8.3
	100인 이상	76	25.3
	소속 없음	48	16.0
지위	개인사업장	98	32.7
	관리자	36	12.0
	종사자	166	55.3
전체 업무 경력	1년 미만	43	14.3
	1~5년 미만	91	30.3
	5~10년 미만	66	22.0
	10~15년 미만	40	13.3
	15년 이상	60	20.0
현 업무 경력	1년 미만	59	19.7
	1~5년 미만	141	47.0
	5~10년 미만	46	15.3
	10~15년 미만	19	6.3
	15년 이상	35	11.7
		300	100.0

2) 노무제공 실태

특고종사자의 노무 제공의 실태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업무가 2개 이상 시 특수형태근로에 한하여 주된 업무(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 개인사업자의 등록은 택배기사 76.7%, 화물차주 66.7%, 건설기계조종사 5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의 직종이 낮게 나타났다.

〈표 V-2〉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아니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3(55.0)	27(45.0)	60(100.0)
골프장 캐디	1(3.3)	29(96.7)	30(100.0)
택배기사	23(76.7)	7(23.3)	30(100.0)
퀵서비스기사	4(13.3)	26(86.7)	30(100.0)
대리운전기사	2(6.7)	28(93.3)	30(100.0)
방문판매원	7(23.3)	23(76.7)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6.7)	28(93.3)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4(13.3)	26(86.7)	30(100.0)
화물차주	20(66.7)	10(33.3)	30(100.0)
합계	96(32.0)	204(68.0)	300(100.0)

- 직종 중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은 응답자 모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운전기사 36.7%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회사 소속이 낮게 나타났다.

〈표 V-3〉 회사 소속 여부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아니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40(66.7)	20(33.3)	60(100.0)
골프장 캐디	25(83.3)	5(16.7)	30(100.0)
택배기사	25(83.3)	5(16.7)	30(100.0)
퀵서비스기사	23(76.7)	7(23.3)	30(100.0)
대리운전기사	11(36.7)	19(63.3)	30(100.0)
방문판매원	30(100.0)	-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0(100.0)	-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30(100.0)	-	30(100.0)
화물차주	23(76.7)	7(23.3)	30(100.0)
합계	237(79.0)	63(21.0)	300(100.0)

- 업무수행 시 체결한 계약의 유형은 물량 도급계약 8.3%, 노무 도급계약 23.3%, 업무 위·수탁계약 68.3%로 업무 위·수탁 계약이 높게 나타났다.
- 계약 체결 유형 중 물량 도급계약은 방문판매원이 16.7%, 건설기계조종사 15.0%로 타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노무 도급계약은 대리운전기사 43.3%, 건설기계조종사 41.7%, 업무 위·수탁 계약은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0.0%, 택배기사 8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4〉 계약 체결 유형

(단위 : 명 (%))

직종	물량 도급계약	노무 도급계약	업무 위·수탁계약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9(15.0)	25(41.7)	26(43.3)	60(100.0)
골프장 캐디	-	7(23.3)	23(76.7)	30(100.0)
택배기사	4(13.3)	-	26(86.7)	30(100.0)
퀵서비스기사	4(13.3)	8(26.7)	18(60.0)	30(100.0)
대리운전기사	-	13(43.3)	17(56.7)	30(100.0)
방문판매원	5(16.7)	4(13.3)	21(70.0)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3(10.0)	27(90.0)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	6(20.0)	24(80.0)	30(100.0)
화물차주	3(10.0)	4(13.3)	23(76.7)	30(100.0)
합계	25(8.3)	70(23.3)	205(68.3)	300(100.0)

- 노무제공의 형태는 상시적·계속적(3개월 이상)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가 높게 나타났고, 일시적·간헐적(3개월 미만)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일회성 노무 제공은 대리운전기사가 4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V-5〉 노무 제공 형태

(단위 : 명 (%))

직종	상시적·계속적(3개월 이상)	일시적·간헐적(3개월 미만)	일회성 노무제공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4(56.7)	7(11.7)	19(31.7)	60(100.0)
골프장 캐디	27(90.0)	2(6.7)	1(3.3)	30(100.0)
택배기사	25(83.3)	-	5(16.7)	30(100.0)
퀵서비스기사	21(70.0)	-	9(30.0)	30(100.0)
대리운전기사	12(40.0)	6(20.0)	12(40.0)	30(100.0)
방문판매원	24(80.0)	5(16.7)	1(3.3)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0(100.0)	-	-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30(100.0)	-	-	30(100.0)
화물차주	27(90.0)	-	3(10.0)	30(100.0)
합계	230(76.7)	20(6.7)	50(16.7)	300(100.0)

-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현황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제품설치원은 1개의 사업장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대리운전기사 2개 사업장이 46.7%로 나타났고, 3개 이상의 사업장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직종은 건설기계조종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로 나타났다.

〈표 V-6〉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현황

(단위 : 명 (%))

직종	1개	2개	3개 이상	해당 없음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28(46.7)	4(6.7)	12(20.0)	16(26.7)	60(100.0)
골프장 캐디	28(93.3)	-	-	2(6.7)	30(100.0)
택배기사	26(86.7)	2(6.7)	-	2(6.7)	30(100.0)
퀵서비스기사	20(66.7)	2(6.7)	8(26.7)	-	30(100.0)
대리운전기사	7(23.3)	14(46.7)	9(30.0)	-	30(100.0)
방문판매원	30(100.0)	-	-	-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0(100.0)	-	-	-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30(100.0)	-	-	-	30(100.0)
화물차주	20(66.7)	2(6.7)	5(16.7)	3(10.0)	30(100.0)
합계	219(73.0)	24(8.0)	34(11.3)	23(7.7)	300(100.0)

3) 특고종사자의 산업재해 위험과 안전보건교육 실태

- 지난 3년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나 건강상 위험의 경험은 퀵서비스기사 66.7%, 택배기사 36.7%, 골프장 캐디 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 업무 관련 사고나 건강상 위험 경험 여부 - 지난 3년 기준

(단위 : 명 (%))

직종	있다	없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15(25.0)	45(75.0)	60(100.0)
골프장 캐디	9(30.0)	21(70.0)	30(100.0)
택배기사	11(36.7)	19(63.3)	30(100.0)
퀵서비스기사	20(66.7)	10(33.3)	30(100.0)
대리운전기사	7(23.3)	23(76.7)	30(100.0)
방문판매원	1(3.3)	29(96.7)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4(13.3)	26(86.7)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8(26.7)	22(73.3)	30(100.0)
화물차주	7(23.3)	23(76.7)	30(100.0)
합계	82(27.3)	218(72.7)	300(100.0)

- 수행하는 업무의 사고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노출은 퀵서비스기사 86.7%, 화물차주 73.3%, 건설기계조종사 66.7%, 택배기사 6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 수행 업무의 사고나 건강상 위험 노출 여부

(단위 : 명 (%))

직종	있다	없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40(66.7)	20(33.3)	60(100.0)
골프장 캐디	14(46.7)	16(53.3)	30(100.0)
택배기사	19(63.3)	11(36.7)	30(100.0)
퀵서비스기사	26(86.7)	4(13.3)	30(100.0)
대리운전기사	12(40.0)	18(60.0)	30(100.0)
방문판매원	5(16.7)	25(83.3)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23.3)	23(76.7)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17(56.7)	13(43.3)	30(100.0)
화물차주	22(73.3)	8(26.7)	30(100.0)
합계	162(54.0)	138(46.0)	300(100.0)

- (노출 인식 대상자 162명, 54.0% 응답) 사고나 건강상 위험 노출의 주된 원인으로는 본인의 부주의 33.5%, 잘못된 작업방법 18.6%, 점검 등 사업장 관리 부족 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본인 부주의에 대하여 퀵서비스기사 50.0%, 택배기사 47.4%, 대리운전기사 41.7%, 가전제품설치원 35.3%로 나타났다.

〈표 V-9〉 위험 발생의 주요 원인(노출 인식 대상)

(단위 : 명 (%))

직종	본인 부주의	잘못된 작업 방법	시설 설비 위험	원재료 유해성	점검 등 사업장 관리 부족	안전 보건 정보 제공 및 교육 부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11 (28.2)	10 (25.6)	2 (5.1)	3 (7.7)	9 (23.1)	2 (5.1)	2 (5.1)
골프장 캐디	2 (14.3)	1 (7.1)	1 (7.1)	-	4 (28.6)	2 (14.3)	4 (28.6)
택배기사	9 (47.4)	2 (10.5)	5 (26.3)	-	-	-	3 (15.8)
퀵서비스기사	13 (50.0)	5 (19.2)	3 (11.5)	-	3 (11.5)	2 (7.7)	-
대리운전기사	5 (41.7)	1 (8.3)	-	-	-	2 (16.7)	4 (33.3)
방문판매원	2 (40.0)	-	-	-	-	-	3 (6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 (14.3)	-	1 (14.3)	-	1 (14.3)	-	4 (57.2)
가전제품설치원	6 (35.3)	5 (29.4)	3 (17.6)	-	1 (5.9)	2 (11.8)	-
화물차주	5 (22.7)	6 (27.3)	4 (18.2)	-	5 (22.7)	2 (9.1)	-
합계	54 (33.5)	30 (18.6)	19 (11.8)	3 (1.9)	23 (14.3)	12 (7.5)	20 (12.4)

- 타 법령 또는 회사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여부는 65.0%로 화물차주 80.0%, 퀵서비스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각각 76.7%, 건설기계조종사 75.0%로 나타났다.

〈표 V-10〉 타 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없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45(75.0)	15(25)	60(100.0)
골프장 캐디	17(56.7)	13(43.4)	30(100.0)
택배기사	18(60.0)	12(40)	30(100.0)
퀵서비스기사	23(76.7)	7(23.3)	30(100.0)
대리운전기사	9(30.0)	21(70)	30(100.0)
방문판매원	17(56.7)	13(43.3)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3(76.7)	7(23.4)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19(63.3)	11(36.7)	30(100.0)
화물차주	24(80.0)	6(20)	30(100.0)
합계	195(65.0)	105(35)	300(100.0)

- 타 법령 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의 교육시간은 2시간 미만의 경우 퀵서비스 기사 78.3%, 2~4시간 골프장 캐디 64.7%, 택배기사 61.1%, 4~8시간 택배기사 27.8%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V-11〉 타 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이수자 대상)

(단위 : 명 (%))

직종	2시간 미만	2시간 ~ 4시간	4시간 ~ 8시간	8시간 이상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12(26.7)	13(28.9)	6(13.3)	14(31.1)	45(100.0)
골프장 캐디	5(29.4)	11(64.7)	-	1(5.9)	17(100.0)
택배기사	-	11(61.1)	2(11.1)	5(27.8)	18(100.0)
퀵서비스기사	18(78.3)	5(21.7)	-	-	23(100.0)
대리운전기사	4(44.4)	4(44.4)	1(11.1)	-	9(100.0)
방문판매원	6(35.3)	8(47.1)	3(17.6)	-	17(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52.2)	11(47.8)	-	-	23(100.0)
가전제품설치원	9(45.0)	9(45.0)	2(10.0)	-	20(100.0)
화물차주	3(12.5)	7(29.2)	8(33.3)	6(25.0)	24(100.0)
합계	69(35.2)	79(40.3)	22(11.2)	26(13.3)	196(100.0)

- 타 법령 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의 교육형태는 인터넷 교육이 53.6%, 현장교육 26.5%, 집체교육 19.9%로 나타났다.
- 집체 교육은 화물차주 37.5%, 방문판매원 35.0%, 택배기사 33.3%로 높게 나타났고, 현장교육은 골프장 캐디 75.6%, 가전제품설치원 35.0%, 대리운전기사 33.3%, 인터넷 원격교육은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87.0%, 퀵서비스기사 7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 타 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형태(이수자 대상)

(단위 : 명 (%))

직종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10(22.2)	16(35.6)	19(42.2)	45(100.0)
골프장 캐디	2(11.8)	13(76.5)	2(11.8)	17(100.0)
택배기사	6(33.3)	3(16.7)	9(50.0)	18(100.0)
퀵서비스기사	-	6(26.1)	17(73.9)	23(100.0)
대리운전기사	1(11.1)	3(33.3)	5(55.6)	9(100.0)
방문판매원	8(47.1)	3(17.6)	6(35.3)	17(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8.7)	1(4.3)	20(87.0)	23(100.0)
가전제품설치원	7(35.0)	7(35.0)	6(30.0)	20(100.0)
화물차주	9(37.5)	3(12.5)	12(50.0)	24(100.0)
합계	39(19.9)	52(26.5)	105(53.6)	196(100.0)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한 특고종사자 교육 인식의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 40.1%, 사업장 소개 25.8%, 지인 소개 22.7%, 광고 및 홍보자료 11.4% 순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검색은 택배기사 63.3%, 건설기계조종사 56.7%, 사업장 안내는 퀵서비스기사와 방문판매원이 각각 43.3%, 지인 소개는 건설기계조종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이 각각 30.0%, 광고 및 홍보자료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20.7%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V-13〉 안전보건공단 특고종사자 교육 인지 경로

(단위 : 명 (%))

직종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	광고 및 홍보자료	사업장 안내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4(56.7)	18(30.0)	3(5.0)	5(8.3)	60(100.0)
골프장 캐디	11(36.7)	7(23.3)	1(3.3)	11(36.7)	30(100.0)
택배기사	19(63.3)	2(6.7)	5(16.7)	4(13.3)	30(100.0)
퀵서비스기사	11(36.7)	4(13.3)	2(6.7)	13(43.3)	30(100.0)
대리운전기사	10(33.3)	9(30.0)	5(16.7)	6(20.0)	30(100.0)
방문판매원	6(20.0)	7(23.3)	4(13.3)	13(43.3)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31.0)	4(13.8)	6(20.7)	10(34.5)	29(100.0)
가전제품설치원	8(26.7)	9(30.0)	3(10.0)	10(33.3)	30(100.0)
화물차주	12(40.0)	8(26.7)	5(16.7)	5(16.7)	30(100.0)
합계	12(40.1)	68(22.7)	34(11.4)	77(25.8)	299(100.0)

4)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

-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3%, 현행 유지 37.7%, 불필요 16.0%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개선 필요)은 골프장 캐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각각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유지 택배기사 53.3%,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가 각각 4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4〉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

직종	불필요	필요 시 현행대로 진행	필요 (개선 필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11(18.3)	26(43.3)	23(38.3)	60(100.0)
골프장 캐디	3(10.0)	9(30.0)	18(60.0)	30(100.0)
택배기사	4(13.3)	16(53.3)	10(33.3)	30(100.0)
퀵서비스기사	5(16.7)	12(40.0)	13(43.3)	30(100.0)
대리운전기사	9(30.0)	7(23.3)	14(46.7)	30(100.0)
방문판매원	6(20.0)	9(30.0)	15(50.0)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10.0)	9(30.0)	18(60.0)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3(10.0)	12(40.0)	15(50.0)	30(100.0)
화물차주	4(13.3)	13(43.3)	13(43.3)	30(100.0)
합계	48(16.0)	113(37.7)	139(46.3)	300(100.0)

-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는 40.0%가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 있음, 효과 있음)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로는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원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표 V-15〉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효과성 인식

(단위 : 명 (%))

직종	효과 있음	보통	효과 없음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0(50.0)	19(31.7)	11(18.3)	60(100.0)
골프장 캐디	11(36.7)	10(33.3)	9(30.0)	30(100.0)
택배기사	20(66.7)	4(13.3)	6(20.0)	30(100.0)
퀵서비스기사	11(36.7)	9(30.0)	10(33.3)	30(100.0)
대리운전기사	10(33.3)	9(30.0)	11(36.7)	30(100.0)
방문판매원	3(10.0)	24(80)	3(10.0)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0(33.3)	17(56.7)	3(10.0)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12(40.0)	12(40.0)	6(20.0)	30(100.0)
화물차주	13(43.3)	8(26.7)	9(30.0)	30(100.0)
합계	120(40.0)	112(37.3)	68(22.7)	300(100.0)

- 효과 있음과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집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교육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의 인식이 가장 높았다.

〈표 V-16〉 특고종사자 대상 가장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방법

(단위 : 명 (%))

직종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6(12.2)	19(38.8)	20(40.8)	4(8.2)	49(100.0)
골프장 캐디	3(14.3)	10(47.6)	8(38.1)	-	21(100.0)
택배기사	1(4.2)	8(33.3)	15(62.5)	-	24(100.0)
퀵서비스기사	4(20.0)	5(25.0)	11(55.0)	-	20(100.0)
대리운전기사	2(10.5)	8(42.1)	9(47.4)	-	19(100.0)
방문판매원	4(14.8)	14(51.9)	9(33.3)	-	27(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4(14.8)	13(48.1)	7(25.9)	3(11.1)	27(100.0)
가전제품설치원	5(20.8)	10(41.7)	5(20.8)	4(16.7)	24(100.0)
화물차주	3(14.3)	8(38.1)	8(38.1)	2(9.5)	21(100.0)
합계	32(13.8)	95(40.9)	92(39.7)	13(5.6)	232(100.0)

- 개선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교육내용 51.5%, 교육방법 27.9%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7〉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요구 사항

(단위 : 명 (%))

직종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자료	강사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2(18.2)	2(18.2)	5(45.5)	2(18.2)	-	11(100.0)
골프장 캐디	4(44.4)	-	5(55.6)	-	-	9(100.0)
택배기사	1(16.7)	-	3(50.0)	1(16.7)	1(16.7)	6(100.0)
퀵서비스기사	3(30.0)	1(10.0)	3(30.0)	-	3(30.0)	10(100.0)
대리운전기사	3(27.3)	-	7(63.6)	-	1(9.1)	11(100.0)
방문판매원	-	-	3(100.0)	-	-	3(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33.3)	-	2(66.7)	-	-	3(100.0)
가전제품설치원	2(33.3)	-	4(66.7)	-	-	6(100.0)
화물차주	3(33.3)	3(33.3)	3(33.3)	-	-	9(100.0)
합계	19(27.9)	6(8.8)	35(51.5)	3(4.4)	5(7.4)	68(100.0)

- 현재 시행 중인 특고종사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의 효과는 효과 없음(효과 없음, 매우 효과 없음)이 35.4%로 나타났다.

〈표 V-18〉 현행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효과성

(단위 : 명 (%))

직종	효과 있음	보통	효과 없음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20(33.4)	19(31.7)	21(35.0)	60(100.0)
골프장 캐디	11(36.7)	7(23.3)	12(40.0)	30(100.0)
택배기사	12(40.0)	6(20.0)	12(40.0)	30(100.0)
퀵서비스기사	10(33.3)	12(40.0)	8(26.7)	30(100.0)
대리운전기사	12(40.0)	7(23.3)	11(36.7)	30(100.0)
방문판매원	11(36.7)	8(26.7)	11(36.7)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23.3)	11(36.7)	12(40.0)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11(36.6)	9(30.0)	10(33.3)	30(100.0)
화물차주	10(33.3)	11(36.7)	9(30.0)	30(100.0)
합계	104(34.6)	90(30)	106(35.4)	300(100.0)

- 현재 시행 중인 특고종사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의 효과의 효과 없음(효과 없음, 매우 효과 없음)에 응답한 경우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교육과정 43.1%, 교육용 자료 33.9%, 교육콘텐츠 1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9〉 특고종사자의 인터넷 원격 교육 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단위 : 명 (%))

직종	교육과정	교육콘텐츠	교육용 자료	기타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8(38.1)	2(9.5)	7(33.3)	4(19.0)	21(100.0)
골프장 캐디	6(50.0)	4(33.3)	2(16.7)	-	12(100.0)
택배기사	3(25.0)	5(41.7)	4(33.3)	-	12(100.0)
퀵서비스기사	4(44.4)	2(22.2)	2(22.2)	1(11.1)	9(100.0)
대리운전기사	6(46.2)	3(23.1)	4(30.8)	-	13(100.0)
방문판매원	4(36.4)	1(9.1)	6(54.5)	-	11(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5(41.7)	2(16.7)	5(41.7)	-	12(100.0)
가전제품설치원	6(60.0)	-	4(40.0)	-	10(100.0)
화물차주	5(55.6)	1(11.1)	3(33.3)	-	9(100.0)
합계	47(43.1)	20(18.3)	37(33.9)	5(4.6)	109(100.0)

-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제도 개선 시 교육비용의 발생에 대한 부담의 주체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48.7%,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원청) 33.3%, 소속회사(하청) 15.0%, 스스로(본인 부담)가 9%로 나타났다.

〈표 V-20〉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비용의 부담 주체

(단위 : 명 (%))

직종	정부지원	노무를 제공 받는 회사(원청)	소속회사 (하청)	스스로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3(55.0)	18(30.0)	4(6.7)	5(8.3)	60(100.0)
골프장 캐디	11(36.7)	14(46.7)	5(16.7)	-	30(100.0)
택배기사	14(46.7)	8(26.7)	8(26.7)	-	30(100.0)
퀵서비스기사	16(53.3)	10(33.3)	3(10.0)	1(3.3)	30(100.0)
대리운전기사	18(60.0)	9(30.0)	2(6.7)	1(3.3)	30(100.0)
방문판매원	15(50.0)	6(20.0)	9(30.0)	-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1(36.7)	10(33.3)	9(30.0)	-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13(43.3)	12(40.0)	3(10.0)	2(6.7)	30(100.0)
화물차주	15(50.0)	13(43.3)	2(6.7)	-	30(100.0)
합계	146(48.7)	100(33.3)	45(15.0)	9(3.0)	300(100.0)

- 특고종사자의 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집체 교육 이수 의향 여부는 지원범위 100%인 경우는 81.7%, 지원범위 75%는 25.3%, 지원범위 50%는 16.7%로 나타났다.

〈표 V-21〉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시 집체교육 이수 의향

(단위 : 명 (%))

직종	지원범위 50%	지원범위 75%	지원범위 100%
건설기계조종사	19(31.7)	21(35.0)	50(83.3)
골프장 캐디	4(13.3)	10(33.3)	24(80.0)
택배기사	4(13.3)	6(20.0)	24(80.0)
퀵서비스기사	4(13.3)	9(30.0)	20(66.7)
대리운전기사	1(3.3)	4(13.3)	23(76.7)
방문판매원	0(0.0)	0(0.0)	27(9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6(20.0)	9(30.0)	26(86.7)
가전제품설치원	5(16.7)	7(23.3)	26(86.7)
화물차주	7(23.3)	10(33.3)	25(83.3)
합계	50(16.7)	76(25.3)	245(81.7)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인식은 63.7%로 건설기계조종사, 가전 제품설치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표 V-2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아니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56(93.3)	4(6.7)	60(100.0)
골프장 캐디	8(26.7)	22(73.3)	30(100.0)
택배기사	14(46.7)	16(53.3)	30(100.0)
퀵서비스기사	26(86.7)	4(13.3)	30(100.0)
대리운전기사	17(56.7)	13(43.3)	30(100.0)
방문판매원	12(40.0)	18(60.0)	30(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4(46.7)	16(53.3)	30(100.0)
가전제품설치원	26(86.7)	4(13.3)	30(100.0)
화물차주	18(60.0)	12(40.0)	30(100.0)
합계	191(63.7)	109(36.3)	300(100.0)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인식이 있는 대상자의 특고종사자 대상으로 유사 제도 도입 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은 77.5%로 나타났으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건설기계조종사의 직종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3〉 특고종사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도입 시 산재예방 효과 여부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아니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45(80.4)	11(19.6)	56(100.0)
골프장 캐디	6(75.0)	2(25.0)	8(100.0)
택배기사	10(71.4)	4(28.6)	14(100.0)
퀵서비스기사	19(73.1)	7(26.9)	26(100.0)
대리운전기사	13(76.5)	4(23.5)	17(100.0)
방문판매원	9(75.0)	3(25.0)	12(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5.7)	2(14.3)	14(100.0)
가전제품설치원	21(80.8)	5(19.2)	26(100.0)
화물차주	13(72.2)	5(27.8)	18(100.0)
합계	148(77.5)	43(22.5)	191(100.0)

4. 간담회 기반 면담조사 결과

각 직종별 면담조사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답변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고 유사한 내용의 답변 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명시하였다. 각 직종별 면담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퀵서비스기사

〈표 V-24〉 면담조사 결과_퀵서비스기사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하지 않음
	- 플랫폼 가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가입 가능
	- 비전속 형태로 업무 수행
	계약을 함
	- 전속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업무수행
	-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
노무제공	- 플랫폼의 활용도 가능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콜 시스템으로 배송주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업무수행
	- 배차시스템으로 거절은 가능하나 선택은 불가하며, 체결율을 기반으로 추가 배차가 이루어짐
	타 업무 병행
산재보험 가입	- 개인 점포를 운영 중이며, 콜 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
	- 타 업무 병행
	가입
	- 계약을 통해 전속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일하는 기간 동안 시간제 보험을 가입
	미가입
	-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입하지 않음
	- 책임보험만 가입
	- 보험금의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음

문항 내용	조사 결과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출근 시 플랫폼을 시작할 때 약 15초 가량의 안전보건교육 영상 자동 재생 : 다만 스킵이 가능하여 스킵하는 경우가 많음
	-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 이수
	- 플랫폼 가입 시 2시간 의무교육
	-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의 부재 - 알고 있으나 듣지 않음
현행 교육의 문제점	효과성의 미흡
	- 안전보건교육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음
	- 이론적인 내용만을 다루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 실제 업무와 안전교육의 연관성이 부족함
	-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함
	온라인 교육의 이수 충실도 하락
	- 교육 이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바쁘기 때문에 스킵하는 경우가 많음 - 틀어놓고 업무를 수행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무 수행도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적
	- 전속기사는 가능하나 투잡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음
	-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택하게 되는 업종이기에 실질적 교육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 의사는 있음
	- 강제성이 없다면 이수율은 낮을 것 - 강제성을 부여하여 모두 듣게 한다면 효과 있을 것 - 비용 지원에 다른 참여 의사 여부는 강제성의 유무에 준할 것 -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지원이 필요
추가 의견 제시	교육의 필요성은 확실히 존재하나, 직종 특성에 따라 참여도 보장은 어려움
	- 직종 및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교육 효과가 미미함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도 확장 및 안전문화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강제성이 요구됨

문항 내용	조사 결과
	- 강제성이 없는 경우 참여도가 저조할 것
	-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안전 보건교육 구성이 필요

2) 택배기사

〈표 V-25〉 면담조사 결과_택배기사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함 - 개인 운송사업자인 택배기사 - 직·간접 지입 택배기사
노무제공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업무량이 많아 타 직종 또는 다수의 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어려움
산재보험 가입	가입 - 의무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보험료는 업체와 50:50으로 부담 모르겠음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교육 위탁업체에서 연 1회 사업장에 방문하여 집체교육 형태로 교육하며 약 1시간 가량 진행 -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 이수 - 사고사례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이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의 부재
현행 교육의 문제점	실효성의 부족 - 교통사고 이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필요성 인식이 낮음 - 교육시간이 너무 길 경우 집중력 저하 발생 - 교육과정에서 방문판매와 같은 물품 판매가 병행됨에 따른 문제가 있음 교육내용의 중복성 - 반복교육이 중요한지 하나, 교육내용의 지나친 획일성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

문항 내용	조사 결과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 새로운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현재의 교육에 만족
	- 현재 교육내용 및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집체교육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
	-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이수율 확보는 가능할 것
	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의 중복
	- 기존 화물운송자격자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도 많이 존재
	- 현 상황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더 늘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교육과 차별성이 없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
	- 강제성이 없다면 이수율은 낮을 것
	- 제도 개선으로 의무화가 된다면 참여 의사 있음
추가 의견 제시	기존 의무교육과 병행 진행
	- 기존 화물운송자격자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이수율의사 있음
	- 현재 교육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기존 교육의 교육내용에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
	- 최근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
	- 이론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함
	현실적인 교육방안이 필요
	- 시간과 수입이 직결되는 직종의 특성상 긴 시간의 교육은 부담이 있음
	- 온라인 교육을 기존 대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3) 화물차주

〈표 V-26〉 면담조사 결과_화물차주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함
	-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
	-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

문항 내용	조사 결과
	- 화물운송 주선업과 운송업을 겸업 - 정보망을 통한 계약 - 화주와 직접계약
노무제공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 화주의 입장에서는 일시적 노무제공인 경우도 있음 - 주선사업자의 위탁 계약에 따라 화주의 변동이 있음 - 플랫폼 활용 시 일시적 노무제공 형태를 보임
산재보험 가입	가입 - 주선사업자에 의해 보험가입이 되어있음 미가입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 현재는 사고 발생 시 100% 본인이 부담 모르겠음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화주의 사업장 출입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하기에 공단 인터넷 교육 개별 이수 - 화물운송자격자교육 이수(교통안전교육) 주선사업자에 의한 교육 부재 - 주선사업자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부재 -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차주들은 개인사업자이기에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없다는 인식 존재
현행 교육의 문제점	시간과 장소의 제약 - 타 업종과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집체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는 화물운송자격자교육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움 - 교육시간이 너무 길어 하루 업무수행이 불가함으로 인한 손실이 크게 느껴짐 인터넷교육의 효과 미흡 - 인터넷교육의 경우 집중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적고, 이에 따라 교육 효과가 떨어짐 -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부재 현재의 교육에 만족 - 현재 진행되는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에 만족함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집체교육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 - 교육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문항 내용	조사 결과
도입에 대한 의견	-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이수율 확보는 가능할 것
	비용의 지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교육 비용의 지원금의 규모가 교육에 따른 손실을 방지해주지는 못할 것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교육의 내용이 중요
	- 기존교육과 차별성이 없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
	- 강제성이 있어야 참여 유도 가능
	- 강제성이 없다면 이수율은 낮을 것
추가 의견 제시	- 안전보건교육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의무교육과 병행 진행
	- 기존 화물운송자격자교육의 중요도가 더 높기에 이와 함께 진행 된다면 도움은 될 것
	-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도 병행교육으로 해결 가능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
	- 기존 교육과의 차별성이 필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희망
	- 온라인 교육을 기존 대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 화물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와 일괄공지를 한다면 교육 이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4) 대리운전기사

〈표 V-27〉 면담조사 결과_대리운전기사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하지 않음
	- 다수의 플랫폼을 가입을 통한 업무 수행
	- 현재 계약 관련 법 및 계약서가 부재
	계약을 함
	- 단일 업체와 계약 체결
노무제공	- 업체와의 계약절차는 따로 없었으나 프로그램 이용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짐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대리운전업을 주업으로 수행하나, 다수의 계약 관계를 가짐

문항 내용	조사 결과
	- 다수의 플랫폼에 가입하여 업무수행 타 업무 병행
	- 타 주업무가 있으며, 부업으로 대리운전업을 수행
	일시적 노무 제공형태
	- 간헐적 및 선택적 업무 수행
	미가입
산재보험 가입	- 대리운전보험 가입(대리운전 업체에서 단체가입으로 진행되며, 중복 가입이 불가피)
	- 보험 가입 대상의 인지 부재
	모르겠음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 업체에서 자체 안전보건교육 시행
	- 플랫폼 활용 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이수(1분 이내)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현행 교육의 문제점	- 안전보건교육 인지 부재
	-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수하지 않음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 제기
	- 의무가 아니기에 필요성 인식이 부재함
	부업 종사자 특성 반영 필요
	-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업 종사자 등이 많음
	- 부업 종사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접하기가 쉽지 않음
	- 부업 종사자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가 부재
	인터넷교육의 효과 미흡
	- 인터넷 교육의 경우 집중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적고, 이에 따라 교육 효과가 떨어짐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교육의무 주체 명확화
	- 현재 계약에 관한 법 및 계약서 등이 부재하기에 교육 주체가 모호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교육대상의 확대가 필요
	-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효과가 있음
	- 부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필요
	강제성 필요
	- 강제성이 있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효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문항 내용	조사 결과
추가 의견 제시	- 비용 지원,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
	플랫폼사의 활용이 필요
	- 기존 플랫폼 활용 시 수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의 강화방안이 필요
	- 반복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으로의 인정
	안전보건교육 홍보 강화
	- 안전보건교육의 인지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안전보건교육 내용의 보완이 필요
	- 온라인 교육의 내용이 기존 대비 보강 필요
	-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의 교육 희망
	- 직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희망

5) 건설기계조종사

〈표 V-28〉 면담조사 결과_건설기계조종사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근로계약
	-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임대계약
	-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계약
노무제공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해당 현장의 완공까지 1년단위 계약
	타 현장업무 병행
	- 타 현장과의 업무 병행
	일시적 노무 제공형태
산재보험 가입	- 간헐적 업무 수행
	가입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가입
	- 건설사에서 가입
	- 가입은 되어 있으나 자세히는 모르겠음
	미가입
안전보건 교육 실태	- 임대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가입
	모르겠음
	안전보건교육 이수
	- 도급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업무시작 전 안전보건교육)

문항 내용	조사 결과
현행 교육의 문제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도급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이수(매달 1시간 이상 집체교육 형태의 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조종사교육 이수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근로자의 실행의지 부족
	- 반복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근로자의 실행 의지 부족으로 사고 야기
	- 높은 숙련도를 기반으로 교육내용 이행도가 낮음
	교육 내용의 부실
	- 고경력자들이 많은 직종 특성상 반복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 일반적인 교육내용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건설업 특성상 이수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이 많으나 내용이 대동소이함
	- 반복교육의 개념으로는 좋으나 집중력하락을 야기함
	강사의 전문성 미흡
	- 강사의 전문성이 종사자보다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 경험 및 대처역량의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이에 미치지 어려움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현재 안전보건교육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
	- 이수를 해야 한다가에 이수하고 있으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음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보수교육의 개념이 없기에 교육 효과가 지속되지 못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의무 교육이 너무 많음
	- 기존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 교육과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아 부정적임
	교육형태 개선 필요
	- 집체 교육은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온라인 교육은 효과성이 미미함
	- 현장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 가장 적합할 것
	교육내용의 다양화 필요
	- 기존의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면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화가 필요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

문항 내용	조사 결과
추가 의견 제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 의사는 있음
	- 강제성이 없다면 이수율은 낮을 것
	- 강제성을 부여하여 모두 듣게 한다면 효과 있을 것
	- 비용 지원에 따른 참여 의사 여부는 강제성의 유무에 준할 것
	강사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
	- 전문성이 있는 강사의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함
	교육에 대한 성과측정 방안 필요
	- 단순한 이수가 아닌 성과측정을 통한 실질적 교육 효과 검토 방안 모색 및 적용이 필요
	-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 충실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성과 측정 방안이 필요
	안전보건교육 내용 보완
	-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위주의 교육을 희망
	- 이론중심 교육이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희망
	기존 의무교육과 병행 진행
	- 기존의 의무화된 안전보건교육 함께 진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
	-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도 병행교육으로 해결 가능
	현장교육의 지원
	- 현재 도급인(대기업의 경우)에 의한 현장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및 강화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현장교육이고, 현장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임에 따라 이에 대한 강화 및 지원이 필요

6) 골프장캐디

〈표 V-29〉 면담조사 결과_골프장 캐디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하지 않음
	- 따로 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음
	계약을 함
노무제공	-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문항 내용	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	- 단일 골프장에서 상시적 노무를 제공
	가입
	- 의무가입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 모르겠음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골프장 차제 안전교육 이수(매년 1회 1시간 정도의 안전교육 진행)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현행 교육의 문제점	- 안전보건교육 인지 부재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인식 부족
	- 업무의 위험도가 낮아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인식이 부족
	온라인 교육 충실도가 낮음
	- 교육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충실도 하락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안전보건교육 인지 부재
	- 안전보건교육의 인지 자체가 부재
	강제성 필요
	- 강제성이 있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효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강제성을 부여하여 인지도 향상을 도모
추가 의견 제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필요성 인식개선이 필요
	- 교육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의무화를 통해서라도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7) 방문판매원

〈표 V-30〉 면담조사 결과_방문판매원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함
	- 교육 수료 후 위촉 계약(업무위탁계약)
노무제공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업무에 대한 통제 및 제약은 없으나, 상시 업무를 수행

문항 내용	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	- 소득을 위해서는 겸업이 불가
	가입
	- 사전교육(수습기간) 이수 계약 시 가입 진행
	미가입
안전보건 교육 실태	- 모르겠음
	안전보건교육 이수
	- 입사 시 배치 전 교육을 이수하며, 상시 교육 중 일부 안전보건 교육이 병행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현행 교육의 문제점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안전보건교육 인지 부재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인식 부족
	- 업무의 위험도가 낮아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인식이 부족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온라인 교육 충실도가 낮음
	- 교육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충실도 하락
	안전보건교육 인지 부재
	- 안전보건교육의 인지 자체가 부재
추가 의견 제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이 있음
	- 의무화되어 종사자 모두가 이수하는 것을 희망
	- 업무 시작 전 이수증 제출 통한 의무화 필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비용 지원이 필요
	-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책 마련이 필요
	필요성 인식 개선이 필요
	- 의무화를 통해서라도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배치 전 교육 면제 방안 검토 요청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 시 배치 전 교육 일부 면제 희망
	교육내용 개선
	-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의 교육 희망

8) 가전제품설치원

〈표 V-31〉 면담조사 결과_가전제품설치원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함

문항 내용	조사 결과
	- 수습기간을 거쳐 설치업체와 계약 진행
노무제공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업무 특성상 중복계약은 어려움
산재보험 가입	가입 - 사업주와 보험료 50%씩 부담 - 상세내용은 잘 모르나 가입 상태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에서 안전보건교육 일부 이수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현행 교육의 문제점	전문 교육의 필요 - 현장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은 상황이 다수 발생하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방안 교육이 부재 강사의 전문성 미흡 - 강사의 전문성이 종사자보다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반복교육이 중요 - 단발성 교육보다는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함 전문성문제로 실질적 도움될지 의문스러움 - 각 제조업체별 설치제품별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안전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낮음 의무화 및 비용지원 필요 - 안전보건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참여 의사 있음
추가 의견 제시	교육내용의 개선 - 사고사례 및 대책 기반의 안전보건교육 희망 - 지속적인 교육내용 업데이트 필요 전문적 강사가 필요 - 실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가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자체교육 강화 지원 희망 -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설치제품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이는 자체교육 지원 및 강화로만 가능

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표 V-32〉 면담조사 결과_대여제품방문점검원

문항 내용	조사 결과
계약유형	계약을 함 - 교육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하여 위촉 계약 진행
노무제공	상시적 노무 제공형태 - 교육기간의 존재 및 업무수행량 등 업무 특성상 검업이 어려움
산재보험 가입	가입 - 사업주와 보험료 50%씩 부담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교육 이수 - 계약 전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안전보건교육 진행 - 자체 교육으로 안전교육 이수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현행 교육의 문제점	현행 안전보건교육으로 충분함 - 현재 수행되는 자체 안전보건교육으로 충분 온라인 교육의 내용 개선 필요 - 일반적인 이론 중심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희망
서비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추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 부재 - 현행 안전보건교육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업무수행 가능 - 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이 부족하다면 도입의 필요성이 있겠으나 현재는 부족함을 느끼는 수준은 아님 의무화 및 비용지원 필요 - 안전보건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 비용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참여의사 있음
추가 의견 제시	교육내용의 개선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희망 - 지속적인 교육내용 업데이트 필요 - 실제 업무와 관련성 있는 교육이 필요 계약 전 교육 면제 방안 검토 요청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 시 배치 전 교육 일부 면제 희망

5. 조사결과 기반 5개 문항 비대면 설문조사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5개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특고종사자 4,590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의 직종은 건설기계조종사 68.2%로 가장 높았으며,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4〉 참여대상자의 직종 특성

(단위 : 명 / %)

직종	빈도	빈도율
건설기계조종사	4,153	68.2
골프장 캐디	406	6.7
택배기사	239	3.9
퀵서비스기사	568	9.3
대리운전기사	59	1.0
방문판매원	69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4	3.4
가전제품설치원	100	1.6
화물차주	290	4.8
합계	6,088	100

- 안전보건교육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강사의 확대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32.2%, 교육비 및 교통비 등의 지원 27.9%, 콘텐츠의 다양화(사고사례 중심 등) 26.1%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로는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강사의 확대에 대하여 대리운전기사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5〉 안전보건교육 참여 확대 방안

(단위 : 명 (%))

직종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강사 확대	콘텐츠의 다양화 (사고사례 중심 등)	교육비 및 교통비 등의 지원	안전보건교육 인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건설기계조종사	1,776(42.8)	1,093(26.3)	1,104(26.6)	1,405(33.8)
골프장 캐디	145(35.7)	114(28.1)	136(33.5)	118(29.1)
택배기사	81(33.9)	77(32.2)	71(29.7)	77(32.2)
퀵서비스기사	230(40.5)	123(21.7)	204(35.9)	137(24.1)
대리운전기사	31(52.5)	19(33.2)	15(23.2)	6(10.2)
방문판매원	32(46.4)	25(36.2)	16(23.2)	17(24.6)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0(44.1)	47(23.0)	58(28.4)	60(29.4)
가전제품설치원	44(44.0)	26(26.0)	22(22.0)	29(29.0)
화물차주	111(38.3)	67(23.1)	71(24.5)	110(37.9)
합계	2,540(41.7)	1,591(26.1)	1,697(27.9)	1,959(32.2)

- 안전보건교육 참여 시 고민이 되는 것은 일정 조정, 한 번에 이수해야 할 교육의 시간 부담 등의 시간에 대한 제약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부재, 방문의 부담 등의 장소 27.8%, 교육비용, 교육으로 인한 손실의 부담 등의 비용 19.9%, 교육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정보 18.1%로 나타났다.

〈표 V-36〉 안전보건 교육 시 고민 사항

(단위 : 명 (%))

직종	시간	장소	비용	정보
건설기계조종사	3,028(72.9)	1,153(27.8)	834(20.1)	760(18.3)
골프장 캐디	282(69.5)	107(26.4)	76(18.7)	81(20.0)
택배기사	183(76.6)	58(24.3)	44(18.4)	40(16.7)
퀵서비스기사	408(70.3)	110(19.4)	138(24.3)	92(16.2)
대리운전기사	41(69.5)	10(16.9)	10(16.9)	15(25.4)
방문판매원	47(68.1)	19(27.5)	12(17.4)	15(21.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51(74.0)	57(27.9)	41(20.1)	27(13.2)
가전제품설치원	69(69.0)	21(21.0)	20(20.0)	18(18.0)
화물차주	215(74.1)	102(35.2)	39(13.4)	53(18.3)
합계	4,424(72.7)	1,695(27.8)	1,214(19.9)	1,101(18.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유사한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하여 81.8%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전제품설치원의 인식이 89.0%로 가장 높았다.

〈표 V-3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유사 제도의 필요성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아니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450(83.1)	703(16.9)	4,153(100.0)
골프장 캐디	291(71.7)	115(28.3)	406(100.0)
택배기사	195(86.1)	44(18.4)	239(100.0)
퀵서비스기사	447(78.7)	121(21.3)	568(100.0)
대리운전기사	52(88.1)	7(11.9)	59(100.0)
방문판매원	60(87.0)	9(13.0)	69(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74(85.3)	30(14.7)	204(100.0)
가전제품설치원	89(89.0)	11(11.0)	100(100.0)
화물차주	221(76.2)	99(23.8)	290(100.0)
합계	4,979(81.8)	1,109(18.2)	6,088(100.0)

- 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 비용이 발생 시 비용의 부담은 정부 62.9%,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원청) 28.3%, 소속회사(하청) 5.3%, 노무 제공자(본인부담) 3.6%로 나타났다.

〈표 V-38〉 교육 비용의 주체

(단위 : 명 (%))

직종	정부	노무 제공 받는회사 (원청)	소속회사 (하청)	노무 제공자 (본인부담)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2,536(61.1)	1,259(30.3)	221(5.3)	137(3.3)	4,153(100.0)
골프장 캐디	243(59.9)	106(26.1)	27(6.7)	30(7.4)	406(100.0)
택배기사	149(62.3)	64(26.8)	15(6.3)	1(4.6)	239(100.0)
퀵서비스기사	430(75.7)	95(16.7)	19(3.4)	24(4.3)	568(100.0)
대리운전기사	40(67.8)	14(23.7)	5(8.5)	- (-)	59(100.0)
방문판매원	41(59.4)	21(30.4)	4(5.8)	3(4.4)	69(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18(57.8)	70(34.3)	13(6.4)	3(1.5)	204(100.0)
가전제품설치원	64(64.0)	26(26.0)	5(5.0)	5(5.0)	100(100.0)
화물차주	207(71.4)	67(23.1)	12(4.1)	4(1.4)	290(100.0)
합계	3,828(62.9)	1,722(28.3)	321(5.3)	217(3.6)	6,088(100.0)

- 비용 지원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 의향은 84.0%로 나타났으며, 건설기계조종사가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9〉 비용 지원 시 교육 참여 의향

(단위 : 명 (%))

직종	그렇다	아니다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3,585(86.3)	568(13.7)	4,153(100.0)
골프장 캐디	283(69.7)	123(30.3)	406(100.0)
택배기사	196(82.0)	43(18.0)	239(100.0)
퀵서비스기사	459(80.0)	109(19.2)	568(100.0)
대리운전기사	51(86.4)	8(13.6)	59(100.0)
방문판매원	59(85.5)	10(14.5)	69(100.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68(82.4)	36(17.6)	204(100.0)
가전제품설치원	83(83.0)	17(17.0)	100(100.0)
화물차주	232(80.0)	58(20.0)	290(100.0)
합계	5,116(84.0)	972(16.0)	6,088(100.0)

6.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교육 운영 실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의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각 직종별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대상 조사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이 대표적이며, 해당 교육은 무료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특고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 공단의 안전 보건교육포털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83개의 안전보건 교육기관(S등급 21개, A등급 27개, B등급 3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일부 기관(퀵서비스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러닝뱅크 등)에서만 수요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⁷⁴⁾

추가적으로 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직종은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화물차주가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택배기사 및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설문조사에서 22년, 23년의 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74)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민간안전보건교육기관안내,
<https://www.koshats.or.kr/support/assist/trainingcompanyv2018?searchListType=31&searchIststmGradSeCd=S&searchText=&page=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156개소 중 111개소가 응답(71%)하였고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다.⁷⁵⁾

-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과정은 11개 기관(10%)에서 개설되었으며, 미개설 사유로는 ‘수요의 부족’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교육대상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32%, 골프장캐디 27%, 택배기사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았다.
- 교육형태는 인터넷 원격교육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교육방법은 강의식이 50%, 시청각교육이 36%로 높게 나타났다.
- 교육내용은 작업 개요 및 특성,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안전작업 수칙,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가 각 20%로 조사되었다.
- 현행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주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25%, ‘단시간·다수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용도’가 21%로 높게 나타났다.
- 현행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으로는 ‘건설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사전 기초교육 제도 도입’이 36%, ‘특고종사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화된 기관 필요’가 28%로 조사되었다.

2)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조사

현재 교육을 운영 중인 교육기관 및 타 법령에 따른 각 직종별 교육 이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설문 결과(2023)

(1) 퀵서비스 기사

가) 안전보건공단

〈표 V-39〉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퀵서비스 기사

직종	교육내용
퀵서비스 기사	(특고) 퀵서비스업 종사자 배달작업 안전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40〉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퀵서비스 기사	5,289	4,475

나) 퀵서비스 협회

사단법인 퀵서비스협회에서는 퀵서비스기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형태의 특고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41〉 사단법인 퀵서비스협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퀵서비스기사

과목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개론	• 퀵서비스배달종사자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해설 • 안전운행을 위한 보호구 종류 및 선택요령	60분
사고예방과 건강관리	• 환경별 안전운전 요령 •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요령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올바른 운반방법	30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퀵서비스배달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퀵서비스 재해사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요령	30분

다) Learning Bank

Learning Bank는 퀵서비스기사를 대상으로 출강교육 형태의 퀵서비스 기사 안전보건교육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42〉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퀵서비스기사

과목명	주요내용	교육 시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산업안전 재해예방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택배기사 및 퀵배달원 사고통계 및 시사점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4시간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의 이해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작업개시전 점검요령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정리정돈 및 청소	4시간
작업공정의 안전작업 방법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및 표준안전 작업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 요령 및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방안	4시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뇌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건강장해 등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4시간

(2) 택배업

가) 안전보건공단

〈표 V-4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택배업

직종	교육내용
택배업	(특고) 택배업 배송작업 안전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 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44〉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택배업	12,257	13,037

나) Learning Bank

Learning Bank는 택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강교육 형태의 특고종사자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45〉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택배업

과목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산업안전 재해 예방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택배기사 및 퀵배달원 사고통계 및 시사점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4시간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의 이해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작업개시전 점검요령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정리정돈 및 청소	4시간
작업공정의 안전작업 방법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및 표준안전 작업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 요령 및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방안	4시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뇌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건강장해 등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4시간

다) 화물운수종사자교육

각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는 택배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a)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⁷⁶⁾

〈표 V-46〉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 안내 및 입교식	10분
교통문화	50분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50분
화물 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운전 기법	100분
설문조사 및 이수증 배부	10분

76)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2017.2.28.
https://www.seoulttc.or.kr/bbs/content.php?co_id=ttc02_01

(b)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⁷⁷⁾

〈표 V-47〉 화물자동차 운전자보수교육(집합)

교과목	교육시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사례분석	4시간
안전과 유지비 절감을 위한 차량 관리	

〈표 V-48〉 법령위반자 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사례분석	7시간
안전과 유지비 절감을 위한 차량관리	
차량 일상점검과 에코드라이브	
효과적인 고객소통을 위한 실전기술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1시간

(c) 제주특별자치도⁷⁸⁾

〈표 V-49〉 제주특별자치도

교과목	교육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교통관련 법규, 서비스 자세,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4시간

77)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https://www.int.or.kr/transp/transp_curri_subject.php

78)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edu.kotsa.or.kr/user/crse/CrseGuidanceUserList.do#none>

(d)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⁷⁹⁾

〈표 V-50〉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줄이기	3시간
안전한 화물운송과 고객 만족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1시간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 설문조사 등	-

〈표 V-51〉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 접수, 교육생활 안내, 입교식	1시간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1시간
운전자준수사항	1시간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및 응급처치	1시간
운전자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1시간
친절, 서비스 및 직업윤 리관 함양	1시간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2시간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1시간

79)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http://www.gntti.or.kr/proc/plan01>

(e)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⁸⁰⁾

〈표 V-52〉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계	4시간
소계	1시간
- 고객응대 및 감동주는 서비스실천기법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사고	
- 장애인 승객에 대한배려와 이해	60분
소계	2시간
- 교통사고 사례분석과 해설	
- 안전운행방법 및 교통법률	
- 교통안전교육(동영상)	120분
소계	1시간
-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응급처치 등	50분
- 교육 안내 및 입교식(수료식)	5분
- 홍보 동영상	5분

〈표 V-53〉 강화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계	8시간
소계	4시간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60분
운전자의 자긍심 함양	60분
상황별 고객 친절서비스	60분
운전자의 정신건강 및 웃음치료	60분
소계	3시간
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운전	60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	60분
교통사고시 응급처치요령 및 실습	60분
소계	1시간
교육안내 및 입교식(수료식)	5분
홍보동영상	10분
중식(1일간)	45분

80)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https://gbtti.or.kr/main.tc>

(f) 전라남도교통연수원⁸¹⁾

〈표 V-54〉 전라남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등록 접수(연수생등록 사전예약제)	등록
교통안전영상 및 도정 홍보영상 상영	시청각
입교식 및 과정안내	입교식
도로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 해석	1교시
안전운전기법 및 교통사고 예방	2교시
교통약자 사고사례 분석 차량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	3교시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운송질서 함양 및 친절 서비스 자세	4교시
설문조사 및 수료식(수료증 배부)	수료식

〈표 V-55〉 법령위반자 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도로교통법	8시간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교통사고사례	
친절서비스	
올바른 인성함양	
건강관리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81) 전라남도교통연수원

http://www.jtei.or.kr/theme/websre03/page/sub2_1_2.php?top=2&sub=1

(g)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⁸²⁾

〈표 V-56〉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등록 접수(시청각 교육)	50분
입교식 및 행정사항 안내	10분
교통약자 인격존중 및 친절서비스 고속도로 안전 및 운행제한(과적)	50분
안전운전 및 도로교통관련법규	80분
자동차 보험 관리방법 및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	50분
설문조사 및 수료식	-

〈표 V-57〉 온라인 교육 오전, 오후

교과목	교육시간
출결확인 및 행정사항 안내	50분
친절서비스	50분
안전운전 및 도로교통관련법규	80분
자동차 보험 관리방법 및 사고 시 보험처리 요령	50분
설문조사 및 수료식	-

8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https://www.jbtti.or.kr/transportation/sub01View.do>

〈표 V-58〉 현지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등록 접수〈시청각 교육〉	50분
입교식 및 행정사항 안내	10분
교통약자 인격존중 및 친절서비스	50분
안전운전 및 도로교통관련법규	30분
자동차 보험 관리방법 및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	50분
설문조사 및 수수료	-

〈표 V-59〉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등록 접수〈시청각 교육〉	40분
입교식 및 행정사항 안내	10분
운수인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확립	50분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80분
현대인의 건강관리	50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50분
교통사고 원인 및 예방 대책	50분
설문조사 및 수수료	-

(h) 충청북도교통연수원⁸³⁾

〈표 V-60〉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4시간
운전자의 건강관리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기타 운송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V-61〉 법령위반

교과목	교육시간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예방 운전과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체험사례, 나의 다짐	8시간

83) 충청북도교통연수원 http://www.cbtti.or.kr/u_curriculum.php

(i) 충청남도교통연수원⁸⁴⁾

〈표 V-62〉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집합)

교과목	교육시간
개정된 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해석 *우회전 교차로 통행 요령 등 사회적 이슈문제 반영 경제운전을 통한 연비절감 실천요령 및 효과 충남의 교통여건 및 유형별 주요사고 사례분석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 사고, 사례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중심 교육	3시간
인권존중과 올바른 직업의식	1시간
등록, 입교, 설문작성, 수료(수료증 배부) 등	1시간

〈표 V-63〉 인터넷 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개정된 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해석 우회전 교차로 통행 요령 등 사회적 이슈문제 반영 경제운전을 통한 연비절감 실천요령 및 효과 충남의 교통여건 및 유형별 주요사고 사례분석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3시간
인권존중과 올바른 직업의식	1시간

84) 충청남도교통연수원

<https://www.ctti.or.kr/kor/page.do?menuIdx=145&bbscd=0&tcd=0>

〈표 V-64〉 법령 위반자 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교통법규	3시간
교통사고 분석 및 교통안전수칙	3시간
경제운전	1시간
행정시간	1시간

(j) 경기도교통연수원⁸⁵⁾

〈표 V-65〉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교과목 부재	4시간
교과목 부재	8시간

85)경기도교통연수원 <https://www.kytti.or.kr/www/contents.do?key=77>

(k)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⁸⁶⁾

〈표 V-66〉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예방 요령 - 교통안전수칙, 경제운전 방법	1시간
- 개정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대책 -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 화물운송 선진화, 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스쿨존 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 차량화재 시 위급사항 대처법	1시간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 장시간 운전애 따른 건강관리 요령 - 4차 산업혁명시대 교통환경 변화교육 - 위드 코로나시대 생활안전교육 - 시정 홍보 동영상 및 시책 추진 안내 - 광주 문화 관광지 소개	2시간

86)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https://www.gtci.or.kr/gtci/home/content.do?menu=381>

(l)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⁸⁷⁾

〈표 V-67〉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계	4시간
시정홍보 및 행정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운전자의 건강관리	

87)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dti.or.kr/sub.php?Page1=2&Page2=3&Page3=3

(m)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⁸⁸⁾

〈표 V-68〉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교과목	교육시간
운수종사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1시간
실무에 필요한 교통안전수칙	
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1시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서비스의 자세	1시간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1시간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88)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http://www.bstci.or.kr/portal/contents.do?mId=0209020200>

(3) 화물차주

가) 안전보건공단

〈표 V-69〉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화물차주

직종	교육내용
화물차주	특고: 화물차주 작업안전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70〉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화물차주	1,595	3,267

*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지역별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을 택배업과 동일하게 시행됨.

(4) 대리운전 기사

가) 안전보건공단

〈표 V-7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대리운전 기사

직종	교육내용
대리운전 기사	특고)대리운전 종사자 작업안전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72〉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대리운전 기사	138	489

(5) 건설기계조종사

가) 안전보건공단

〈표 V-7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건설기계조종사

직종	교육내용	
공통	(특고:건설기계운전자) 안전관리 개론 (특고:건설기계운전자) 건강관리방안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항타 및 항발기	건설기계조종사(항타 및 항발기)교육과정 특고_항타및항발기 작업안전 II	
특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특고_타워크레인 작업안전 II	
콘크리트 피니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펌프	특고_콘크리트펌프 작업안전 II PSM,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선정방법	
콘크리트 살포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 벙칭플랜트	특고_콘크리트벙칭플랜트 작업안전 II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고_콘크리트믹서트럭 작업안전 II
천공기	특고_천공기 작업안전 II
지게차	특고_지게차 작업안전 II
준설선	특고_준설선 작업안전 II
자갈채취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자갈채취기
아스팔트 피니셔	특고_아스팔트피니셔 작업안전 II
아스팔트 살포기	특고_아스팔트살포기 작업안전 II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스크레이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스크레이퍼
쇄석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쇄석기
불도저	특고_불도저 작업안전 II
모터그레이 더	특고_모터그레이더 작업안전 II
롤러	특고_롤러 작업안전 II
로더	특고_로더 작업안전 II PSM,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선정방법
덤프트럭	특고_덤프트럭 작업안전 II
노상안정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노상안정기
기중기	특고_기중기 작업안전 II
굴착기	특고_굴착기 작업안전 II
공기압축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공기압축기
골재살포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골재살포기

〈표 V-74〉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건설기계조종사	33,048	63,719

〈표 V-75〉 일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4시간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⁸⁹⁾

〈표 V-76〉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4시간
하역운반기계의 구조	
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벙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향타 및 향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준설선(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89) 대한건설기계협회 > 교육안내. <http://edu.kcea.or.kr/sub01/sub02.php>

나) Learning Bank

Learning Bank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출강교육 형태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보건교육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77〉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

과목명	주요내용	교육 시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산업안전 재해예방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택배기사 및 쿠팡배달원 사고통계 및 시사점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4시간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의 이해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작업개시전 점검요령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정리정돈 및 청소	4시간
작업공정의 안전작업 방법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및 표준안전 작업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 요령 및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방안	4시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뇌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건강장해 등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4시간

(6) 골프장 캐디

가) 안전보건공단

〈표 V-78〉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골프장 캐디

직종	교육내용
골프장 캐디	(특고) 캐디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골프장 캐디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79〉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골프장 캐디	5,289	4,475

나) Learning Bank

Learning Bank는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출강교육 형태의 골프장 캐디 안전보건교육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80〉 Learning Bank 안전보건교육: 골프장 캐디

과목명	주요내용	교육 시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산업안전 재해예방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택배기사 및 퀵배달원 사고통계 및 시사점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4시간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의 이해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작업개시전 점검요령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정리정돈 및 청소	4시간
작업공정의 안전작업 방법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및 표준안전 작업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 요령 및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방안	4시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뇌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건강장해 등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4시간

(7) 방문판매원

가) 안전보건공단

〈표 V-8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방문판매원

직종	교육내용
방문 판매원	특고: 방문판매원 작업안전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82〉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방문판매원	416	547

(8)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 안전보건공단

〈표 V-8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직종	교육내용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특고: 방문점검원 작업안전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84〉 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467	1,675

(9)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 안전보건공단

〈표 V-85〉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직종	교육내용
가전제품 설치원	특고: 가전제품 설치·수리업 작업안전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안전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표 V-86〉 안전보건교육 수강 인원

(단위 : 명)

	2022	2023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502	2,466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통 교육

가)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는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교육 형태의 특고종사자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87〉 대한안전교육협회: 특고종사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산업재해 발생 원인 및 예방	2시간
교통안전관리	
직무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중량물에 관한 안전관리	

7. 소결

실태조사 진단·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율 저조

현 제도에서는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하는 종사자의 수는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사업주 및 종사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사항(교육내용, 시기, 교육시간 등)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경우가 존재하여 교육 실시율이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은 다양한 방법 및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수준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율은 낮은 실정이다. 면담조사 대상의 85%가 본인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해당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전체의 약 50% 수준이었다. 또한 35%의 종사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1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에 일부 포함된 안전보건교육 및 입사 및 배치 전 교육 중 1시간 이내의 짧은 안전보건교육 등을 이수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실효성이 낮은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자체 교육에서는 상품판매와 안전보건교육이 병행되는 등 실효성이 낮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의지 저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회비용 부담 및 안전보건교육을 일을 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로 인식하는 등 참여 의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등 일부 종사자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복되는 교육 이수로 인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피로도 증대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참여 의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택배기사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의 경우 업무수행 전 자체사전교육 중 안전보건교육 일부를 포함하여 사전 이수 중임에도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불필요 인식이 형성되어 참여 의지 저조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참여 의지 저조로 인해 주로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현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충실도가 하락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하더라도 업무 종료 후 이수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틀어놓기만 하거나, 스킵하는 등의 현상 발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안전보건교육의 직종별 전문성에 대한 반영 부족

종사자의 전문성이 노무 수령인과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교육 강사 보다 높음으로써 안전보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안전보건교육 자료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종사자들의 교육 불만족도 상승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의 운영실태 파악 결과,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되는

교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교육이 수행되고 있었다. 대부분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며, 중복되는 교육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한 안전보건교육의 운영은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의지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4) 안전보건교육의 질 개선 방안의 부재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 이수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민간 교육기관의 참여도 저조에 따른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의 비활성화됨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직종별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 교육비용은 약 1만원 대로 형성되어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 및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제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과 대책, 예방방법 등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가 특고종사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강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 보건교육 강사를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수행되고, 실무경력이 없는 강사를 통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대처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이 낮아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VI.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언



V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언

1.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제시

특고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은 각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통일된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 특성을 가지는 직종들을 그룹핑하여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교육의 전문성 확보(전체직종 적용)

민간 교육기관의 참여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도입한다면 다수의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하여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의 다양화 및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종별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단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단, 등록요건을 완화할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기에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준에 대한 별도 마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직종의 전문성을 반영한 실무중심의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직종별 관련 기관의 전문가 및 종사자를 포함한 인력풀을 기반으로 교육자료 및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내용은 일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지양하고, 사고사례 및 유사시 대처방안, 예방방법 등을 위주로 현장 작동성에 기반한 교육내용을 지향하여 구성하고 단위 주기별 자료 개선 및 추가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를 교육하기 위한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직종별 실무경력이 많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여, 실효성이 높은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추후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반복적 참여 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홍보 활성화(전체직종 적용)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 필요성, 참여 방법, 미참여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을 홍보함으로써 내적·외적 동기를 부여하여 교육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단의 홍보뿐만 아니라 각 직종별 관련 단체의 협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요구 된다.

3) 타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의 교차인정

건설기계조종사 및 화물차주, 택배기사의 경우 타 법령에 의거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에 교육의 중복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복되는 교육을 최소화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고, 화물차주,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교육 중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교육 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교육의 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교차 인정하기 위한 교육내용의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자체 교육의 지원 및 지도 점검 강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의 경우 전속성이 높고, 업종 특성상 업무수행 전 선행되는 자체 사전교육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지원이란 자체 사전교육에서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편성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실무중심으로 개발된 교육자료 및 양성된 전문강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전속성이 높은 직종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주체에 대한 교육의무 고지 및 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특고종사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도입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낮아 교육의 주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교육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형태와 유사하게 사전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이수증에 교육 시기를 명기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6) 중계프로그램/플랫폼 사용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인증

대리운전기사 외 플랫폼 이용 직종의 경우 전속성이 낮으며 주로 중계프로그램 또는 플랫폼 가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 및 플랫폼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다수의 플랫폼 활용에 의한 중복교육 이수 방지를 위해 인증 절차 도입하고, 교육 효과의 지속을 위해 인증주기를 적용하여 보수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전보건교육제도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고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1)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도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은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 기반 5개 문항에 대한 추가 설문 진행한 결과,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종사자의 비율이 81.6%로 높게 나타나는 등 종사자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설문에서 교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답변은 정부 지원이 62.8%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특고종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및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지원이 요구되며, 교육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 이수 시 산재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 특고종사자의 특성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 중복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이수증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행 시 교육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일괄적인 시행 및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관한 시스템적 통합관리(예를 들어 인증제도 도입)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안)을 제시한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안)

○ 교육시기 : 계약 전 이수를 의무화 할 경우 선 이수 인원 선별계약에 따라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종사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 시작 후 교육이 진행 될 경우 운전 중 교육 이수에 따른 사고 우려가 있음에, 계약 후 및 업무 시작 전 교육 이수를 제안한다.

○ 교육시간 : 교육시간은 신규교육은 2시간으로 하며, 교육효과 유지 기간을 고려하여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안한다. 유효기간 이후 보수 교육 시간은 신규교육과 동일한 2시간으로 한다.

○ 교육형태 : 원격교육의 교육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업무 시간에 따른 부담에 높게 조사되고, 집체교육 시 교육생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 미개설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현행 교육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기에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 교육비용 : 교육비용은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근로자가 50%씩을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며,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등)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교육이수 : 교육 이수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 취득 시 이수증을 발급하며, 이를 통합 관리하여 교육 이수자 관리 및 유효기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중복교육을

방지함으로써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기관 : 기존 안전보건교육기관 외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직종별 노동조합 및 협회의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써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기존 교육기관 지정 심사 시 인력 및 시설, 장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시 각 직종별 특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직종별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양성 교육 이수율 통한 강사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중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인정 방안을 제안한다.

2) 교육내용의 전문성 강화

현행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직종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며, 이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Ⅷ-1〉 안전보건교육 추가 내용 제언

직종	현행 교육내용	추가 교육내용(안)
공통	-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 재해 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 사업장 감염병 관리방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트라우마	- 산재보상 인정 기준 및 방법 - 직종별 사고사례 및 유사시 대처 방안 -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 질병별 자가진단법 - 위험성평가 - 작업 전 스트레칭

직종	현행 교육내용	추가 교육내용(안)
	• 마 관리방안 •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 물 취급 작업 안전 •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 장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 야간작업 및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건설기계 조종사	• (특고:건설기계운전자) 안전관리 개론 • (특고:건설기계운전자) 건강관리 방안 • 기계별 작업안전	• 건설기계별 유지점검 방법 • 건설기계별 유사시 대처방법 • 협력사 안전관리 • 실외작업 안전 • 근로자 작업중지권
골프장 캐디	• (특고) 캐디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골프장 캐디 •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 고객 성향별 클레임 응대방법 • 카트 안전운행 방법 • 실외작업 안전
택배기사	• (특고) 택배업 배송작업 안전 •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고객 성향별 클레임 응대방법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퀵서비스 기사	• (특고) 퀵서비스업 종사자 배달작업 안전 •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이륜차의 유사시 대처방법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대리운전 기사	• (특고)대리운전 종사자 작업안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론(서비스) • (특고:서비스업) 온·습도 건강관리 방안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고객 성향별 클레임 응대방법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직종	현행 교육내용	추가 교육내용(안)
방문판매원	• 특고: 방문판매원 작업안전	• 고객 성향별 클레임 응대방법 • 커뮤니케이션 활동 시 감정노동 관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특고: 방문점검원 작업안전	• 고객 성향별 클레임 응대방법 • 감전 재해 예방
가전제품 설치원	• 특고: 가전제품 설치·수리업 작업 안전	• 고객 성향별 클레임 응대방법 • 운반작업안전 • 수공구 사용 안전 • 감전 재해 예방
화물차주	• 특고: 화물차주 작업안전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작업 전 주요 확인 사항 및 방법 • 협력사 안전관리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적재물 고정 및 장비 점검 방법

3)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고종사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실효성 부재의 요인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높게 제기되었으나, 그 외 강사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문강사양성 교육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안전보건 교육규정이 23년 일부 개정되면서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에 따르면, 공단은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 부여를 위한 강사 요원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수행 되고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자격 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다음의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한다.

-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안)

○ 교육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체계적인 강의기법 및 진행 요령을 숙달케 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하여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교육대상 :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교육형태 및 시간 : 비합숙 집체교육으로 진행하며, 34시간(4박 5일) 교육을 진행하고, 연간 4회 3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교육내용 : 실무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강의기법 및 진행요령을 중점으로 교육을 수행한다.

4) 안전보건교육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특고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각 기관이 협력하여 기관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특고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역할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법 제도의 제·개정 및 교육실시 여부의 관리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제도화 및 타 법령 교육과의 교차인정을 위한 조율,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강사 및 교육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한 도구의 체계화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특고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상 소규모 사업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안전보건교육의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주 및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역할은 교육업무를 지도하고, 민간교육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콘텐츠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태조사의 결과로 확인된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안전보건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며, 각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실효성 높은 교육자료 및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개발 인력풀에 해당 직종의 경력이 있는 실무자를 포함하여 개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중심의 인력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직종별 경력 7년 이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안전보건교육과 실무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

민간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개발된 교육콘텐츠 및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사례 및 도구를 활용하여 특고종사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관련 단체의 역할

특고종사자 직종별 관련 단체에서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관련 단체 및 기관이 함께 참여할 경우, 보다 실효성 높은 교육자료가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종사자 교육 시 교육 만족도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고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특고종사자에 대한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분석하고 직종별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서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특고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고종사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고종사자는 그 특성상 직종이 다양하고, 각 직종별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획일화된 교육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종별 제도를 적용하는 것 또한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유사 특성을 보이는 직종을 그룹핑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으로 ① 교육의 전문성 확보(전체 직종), ②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홍보 활성화(전체 직종), ③ 타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의 교차인정(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④ 자체 교육의 지원 및 지도 점점 강화(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가전 제품설치원, 골프장캐디), ⑤ 특고종사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도입(퀵서비스 기사), ⑥ 중계프로그램/플랫폼 사용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인증(대리운전 기사 및 플랫폼 종사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방안 기반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도입, ② 교육내용의 전문성 강화, ③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양성, ④ 안전보건 교육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의견이 주가 됨에 따라 교육적 방안에 대한 실효성 검증 및 비용과 실효성을 고려한 경제성평가 등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안전보건교육 전문가 중심의 제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편익분석이 수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사회의 산업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약형태와 직종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특고종사자의 적용 범위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특고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교육기관,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보현, 조연재, 오상호. (2019).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문제와 대처 : 학습자 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을 중심으로.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8(4), 208-220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한국일보(2023.01.10.), 특고종사자 점점 늘는데... 69%는 국민연금 수급기준 미충족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016280003283>

정흥준. (2019).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현황과 실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4-51

메디컬투데이(2023.03.02.), 지난해 산재승인 사망자 874명으로 소폭 증가...특고종사자 증가폭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2522681627>

고용노동부. (2023.08.0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23.07.01. 시행)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2023.09.2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3.03.02.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근로복지공단, 2018,2019,2020,2021,2022년 4/4분기 통계현황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stat/stat.jsp>

정흥준, 장희은. (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유정엽 본부장 (한노총 정책본부)

이지선, 장소영. (2021.07.02.).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2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2023.06.27, 시도·산업·종사자성별 종사자 수('20~)

배규식, 2020.07.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 노동 한국교통연구원

이근열 (2020.6.19.). 배달산업 및 노무제공 구조, 근로복지공단 활용하여 재작성

조선비즈. (2021.04.05.). “생각대로”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선정… “전국 배송 네트워크로 이륜차 배송시장 선도”

전윤구. (2021.1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기준과 보호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통계청. 운수업 조사 결과(잠정). 2020. 12. 8.

우상범, 최서연, 박운. (2022).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연구총서. 2022:5

<https://m.earticle.net/Article/A426488>

조선주 외. (201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방준식. (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동법포럼, 31, 79-104.
-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운송 등록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 9062 판결.
- 박성희, (2020.04),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 국제노동법 연구원.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속성 기준 마련
연구 (2015)
- 건설기계 주요통계 현황 보고(2022.12.31.). 국토교통 통계누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
기준. (2020.03)
- 근로복지공단. (2022.06). 2022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매뉴얼
- 정지현, 방준식, 김기남, 노하영, 신용우, 이준호, 이승준, (2020).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골프저널 Golf Journal. (<https://www.golfjournal.co.kr>)

- 대한골프협회. (2023.01). 2021 한국골프지표대한골프협회
- 노호창. (2020).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학, (75), 99-139.
- 레저백서202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23000050>
- 한국골프캐디협회. http://www.k-caddie.com/html/sub2_4.html
- 김수주. (2022.11).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고경봉, 안상미. (2019.4). 화장품·학습지 방문판매 50여만명 직격탄. NEXT ECONOMY(<http://www.nexteconomy.co.kr>)
- 강찬규. 2020.12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종사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연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임고은 기자 10만원 받고 15만원 토한다” 방문 점검원의 부당한 ‘되물림 노동법률 2020.01.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 (2019)
- 鎌田耕一, 個人請負・業務委託型就業者をめぐる法政策, 季刊労働法 241号, 2013, 57頁.
- 노상헌. (2016). “사내하도급·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제 -일본 법령의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48, 92면
- 최서연, 조기홍, 박현아. (2020).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적정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토교통부. (2023.11.20.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3.07.10. 시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 교육과정 > 교육근거.

https://www.seoulttc.or.kr/bbs/content.php?co_id=ttc02_01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 교육시간표.

https://www.int.or.kr/transp/transp_curri_subject.php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 수강신청 > 과정안내.

<https://edu.kotsa.or.kr/user/crse/CrseGuidanceUserList.do#none>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운수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 안내 > 보수교육.

<http://www.gntti.or.kr/proc/plan01>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 교육과정 안내.

<https://gbtti.or.kr/page/2401/1615.tc#>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교육과정 > 과정별 교육안내.

http://www.jtei.or.kr/theme/websre03/page/sub2_1.php?top=2&sub=1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 운수종사자교육 > 보수교육.

<https://www.jbtti.or.kr/transportation/sub01View.do>

충청북도교통연수원 > 운수종사자교육 > 교육과정 안내.

http://www.cbtti.or.kr/u_curriculum.php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운수종사자교육 > 보수교육.

<https://www.ctti.or.kr/kor/page.do?menuIdx=145&bbscd=0&tcd=0>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 교육과정 > 보수교육.

<https://www.gtci.or.kr/gtci/home/content.do?menu=381>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 운수종사자 교육 > 과정별 교육계획 > 보수교육.

<https://www.dti.or.kr/sub.php?Page1=2&Page2=2&Page3=2>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 교육과정 > 보수교육 > 화물보수교육.

<http://www.bstci.or.kr/portal/contents.do?mId=0209020200>

대한건설기계협회 > 교육안내. <http://edu.kcea.or.kr/sub01/sub02.php>

Abstract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rotect special types of workers

Background :

As the service industry expands due to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typical employment relationships increase, and as the number of special workers working in the service industry increases rapidly, the resulting industrial accidents are also on the rise.

In order to protect them, the government is requir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by revis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 actual effect of educ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 such as the diversity of labor provision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and easy job change.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is to be provided by the person providing the labor themselves or by entrusting it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However, due to insufficient

training locations, absence of instructors, and lack of trainees, special types of workers are completing training directly through internet remote learning, but this also lacks effectiveness due to the problem of taking the same or similar training repeatedly.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tect special types of workers, (1)we analyzed the curren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related to special types of workers, (2)analyzed its size and status, (3)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laws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4)conducted a survey on the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identified problems (5)to find ways to improve and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Main research content :

In this study, the curren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was surveyed and the following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a plan to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rotect special types of workers.

1)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types of workers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special types of workers are different for each occupation, and the subject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unclear, resulting in a low implementation rate.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the industry status, business structure and system, and exclusiveness of each occup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we prepared basic data for suggesting plans to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each occup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estimate the total number of special types of workers subject to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e size of special types of workers eligible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as presen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2)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overseas cases, we researched the contents of special types of workers under the laws of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researched and analyzed the operation method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each country to improve a highly effectiv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we researched and analyze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matters under other domestic laws and derived training matters that are being operated overlappingly. Based on this, as a way to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in special types of workers, a plan was proposed to prevent duplicate training through revitalizing the operation of a professional instructor training system and integrated opera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3) Survey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argeting special types of workers, survey items were

created and a meeting-based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in-depth research. Additionall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and collect opinions from a large number of workers, an additional survey was conducted on five major questions. In addition, based on a surve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currently operat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law,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each occupation was identified.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a survey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pecial worker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problems with the curren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ere identified and presented.

4) Proposal for ways to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survey and analysis, we proposed a plan to improve and revitaliz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solv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and protect special types of worke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types of workers are different by occupation,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effectiveness with a uniform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so occupation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were grouped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common and for each group separately, and also a plan to revitalize this.

Research application plan :

- Use in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olicie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 Use as basic data when revising related laws
- Use as basic data when develop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materials and content

Key words :

Special types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dustrial accidents, Survey



부록 1. 설문조사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 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위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문제점,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체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시문과 문항을 자세히 읽고,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연구책임자 / 한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 김남균

2023년

설문지 번호		조사일시	
응답 지역	☐ 서울 ☐ 경기 ☐ 충청도 ☐ 강원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도		

A. 일반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년 도	년
직종	① 건설기계조종사 ② 골프장 캐디 ③ 택배기사 ④ 퀵서비스기사 ⑤ 대리운전기사 ⑥ 방문판매원 ⑦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설치원 ⑨ 화물차주 ⑩ 기타()		
회사규모	① 5인 미만 ② 5~49인 ③ 50~99인 ④ 100인 이상 ⑤ 소속 없음		
지위	① 개인사업자 ② 근로자(☐ 관리자 / ☐ 종사자)		
전체 업무 경력	년 개월	본 업무 경력	년 개월

B. 노무제공 실태

- 답변 시 최근 6개월 기준 / 업무가 2개 이상 시 특수형태근로에 한하여 주된 업무(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기준으로 답변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귀하는 소속된 회사가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귀하가 체결한 계약유형은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가능)?
 ① 물량 도급계약 ② 노무 도급계약 ③ 업무 위·수탁계약
- 귀하의 노무제공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습니까?
 ① 상시적·계속적(3개월 이상) ② 일시적·간헐적(3개월 미만) ③ 일회성 노무제공
- 귀하는 현재 몇 개의 사업장과 계약관계에 있습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 이상

C.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위험과 안전보건교육 실태

1. 귀하는 지난 3년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나 건강상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1. 2의 '①'를 선택한 경우, 위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① 본인 부주의 ② 잘못된 작업방법 ③ 시설·설비의 위험(노후화 등) ④ 원재료의 유해성
⑤ 점검 등 사업장의 관리부족 ⑥ 안전보건정보제공 및 교육 부족 ⑦ 기타()
3.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외 타 법령, 또는 회사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3-1. 3의 '①'을 선택한 경우, 1년에 안전보건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십니까?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 4시간 ③ 4시간 ~ 8시간 ④ 8시간 이상
- 3-2. 3의 '①'을 선택한 경우, 교육을 어떤 형태로 이수하십니까?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 교육 ④ 기타()
4. 귀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① 인터넷 검색 ② 지인 소개 ③ 광고 및 홍보자료 ④ 기타()

D.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

1. 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불필요 ② 필요하며 현행대로 진행 ③ 필요하나 개선 필요
2. 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효과 있음 ③ 보통이다 ④ 효과 없음 ⑤ 매우 효과 없음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 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 교육
⑤ 기타()

① 교육방법 ② 교육장소 ③ 교육내용 ④ 교육자료 ⑤ 강사 ⑥ 기타()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효과 있음 ③ 보통이다 ④ 효과 없음 ⑤ 매우 효과 없음

① 교육과정 ② 교육콘텐츠 ③ 교육용 자료 ④ 기타()

① 정부지원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회사(원청) ③ 소속회사(하청) ④ 스스로 ⑤ 기타()

지원 범위	그렇다	아니다
50%	☐	☐
75%	☐	☐
100%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 명:

(서 명)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결과 기반 주요 5개 문항 설문

1. 다음 중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체크 가능, 최대 2개)

- ①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강사 확대
- ② 콘텐츠의 다양화(사고사례중심등)
- ③ 교육비 및 교통비 등의 지원
- ④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2.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중복체크 가능, 최대 2개)

- ① 시간(일정 조정, 한 번에 이수해야 할 교육의 시간 부담 등)
- ② 장소(교육기관의 부재, 방문의 부담 등)
- ③ 비용(교육비용, 교육으로 인한 손실의 부담 등)
- ④ 정보(교육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등)

3.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던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하여, 꼭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을 전문교육기관에서 한 번의 교육으로 이수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교육 제도

3-1. 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를 위해 교육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정부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회사(원청) ③ 소속회사(하청)
- ④ 노무를 제공하는 자(본인부담)

3-2. 교육비용이 지원된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연구진

연구기관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남균 (교수, 한서대학교)

연구원 : 최서연 (교수, 한서대학교)

연구원 : 조기홍 (실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연구원 : 유혜진 (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연구원 : 정진엽 (박사, 한서대학교)

연구보조원 : 양혜민 (석사과정, 한서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영근 (석사과정, 한서대학교)

연구상대역 : 최윤석 (차장,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간

2023. 04. 04. ~ 2023.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59)

발 행 일 : 2023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한서대학교 교수 김남균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25

팩 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782-75-1